

<p>사정에 의하여 약 2個月餘 늦어진 데 대하여 報告者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事例가 없도록 議政活動을 펼쳐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行政事務監査 結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年度 11月 22일부터 26日까지 5日間の 짧은 日程이었지만 被監査機關의 理解와 協助 속에서 진지하게 監査가 進行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參與로 議會 開院 後 세번째를 맞는 第11回 定期會의 行政事務監査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評價됩니다.</p> <p>그 結果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은 運營委員會 所管事項이 7件, 內務委員會 21件, 財務經濟委員會 29件, 生活環境委員會 36件, 保健社會委員會 11件, 水資源管理委員會 16件, 文化敎育委員會 26件, 建設委員會 95件, 都市整備委員會 195件, 交通委員會 121件 등 모두 557件이며, 기타 委員會別 主要 建議事項도 總 243件에 이르고 있습니다.</p> <p>자세한 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監査結果 綜合報告書와 常任委員會別 監査結果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과 建議事項에 대해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9條의 規定에 의거 當該 地方自治團體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하여 處理한 후 지체없이 그 結果가 議會에 報告될 수 있도록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상으로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대단히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그러면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를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의 內容과 같이 採擇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 10件은 各 常任委員會에서 報告한 油印物의 內容과 같이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I. 감사실시개요 II.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총괄) III. 시정조치 사항 IV. 건의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감사결과종합보고서</p> <p>I. 감사실시개요 가. 목 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하고 '94예산(안) 심의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p> </div> <p>나. 감사기간 ○'93.11.22(월)~26(금) 5일간</p> <p>다. 중점감사사항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93년도 예산집행 결산검사승인 등에 관련된 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라.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감사반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전 윤 구	강 명 수 최 명 진	권혁주, 김태웅, 박광훈, 양원모, 염동수, 윤진상, 장주호, 조문진, 조석만, 소종천, 정홍진	양재대, 현석윤, 이 회, 최태성, 이미숙, 김수진,
내 무	박 회 주	곽 수 영 한 인 수	강정석, 권영빈, 권희영, 김종용, 박광훈, 박상동, 백중원, 심상일, 우경선, 이영화, 허 원, 문일권	유병돈, 구자선, 강기성, 김형득, 손경숙
재 무 경 제	이 성 구	차 재 국 조 상 채	김병식, 김찬희, 김희진, 맹금용, 박별근, 신상철, 염동수, 유준향, 이병수, 조석만, 조희준, 정홍진	안석수, 구자선, 서동석, 홍성범, 이경숙
생 활 환 경	이 민 국	권 혁 주 이 영 춘	국용호, 김강식, 김상복, 김수한, 김창학, 이창근, 전윤구, 정지홍, 최정식, 이기열, 임익근	이찬목, 정화섭, 이준식, 심강유, 김기숙
보 건 사 회	최 호	유 상 근 이 병 직	김길원, 김연수, 유광사, 윤기성, 이금룡, 이영호, 이왕열, 임승후, 장주호, 탁형춘, 이선희	김남중, 정화섭, 박원병, 선종길 최은희
수 자 원	최 종 근	방 호 길 김 석 판	계승택, 구제남, 김성환, 박인호, 심규진, 오기창, 유기중, 임동규, 장문구, 조문진, 김형규	장봉만, 정신남, 구자수, 안윤기, 김애련
문 화 교 육	이 철 호	김 인 우 소 중 천	김인동, 박선동, 손 복, 양원모, 오유근, 이영보, 정일용, 조정순, 차봉오, 최향락, 이재진	정문효, 구자선, 강영태, 임성락, 윤정희
건 설	김 우 중	이 중 학 김 수 복	김동수, 김용일, 백의중, 손윤준, 윤진상, 이정환, 이종석, 장정일, 최세화, 최명진, 최종덕, 여범구	추재엽, 정신남, 박동희, 정구혁, 김미경
도 시 정 비	박 태 원	신 용 길 조 소 현	강명수, 권광택, 김순애, 김종원, 김효선, 이문광, 이재호, 정인섭, 최상혁, 김형근, 홍진구, 김석호	송재경, 정신남, 김성래, 김갑식, 황은주
교 통	배 정 수	이 원 국 김 기 영	권순직, 김태웅, 박하영, 원송희, 윤관병, 이경운, 이춘수, 편봉국, 한상현, 한서규, 오세근, 박영식	김태호, 정화섭, 인길수, 안병기, 이혜숙

6 (第68回—第4次)

마. 위원회별 감사일시 및 감사실시기관		
위 원 회	감 사 기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운 영 위 원 회	1993.11.26	○시의회 사무처
내 무 위 원 회	1993.11.22~11.25	○감사관 ○내무국 ○민방위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재 무 경 제 위 원 회	1993.11.22~11.26	○기획관리실(전자계산소포함) ○재무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생 활 환 경 위 원 회	1993.11.22~11.26	○산업경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소</li> <li>• 공업시험소</li> <li>• 청소년직업훈련원</li> <li>• 서울종합직업훈련원</li> <li>• 한남여자직업훈련원</li> <li>• 상계직업훈련원</li> </ul> ○청소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지도관리사업소</li> <li>• 위생처리사업소</li> </ul>
보 건 사 회 위 원 회	1993.11.22~11.26	○보사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환경연구원</li> <li>- 시립동부병원</li> <li>- 시립아동병원</li> <li>- 시립서대문병원</li> <li>- 시립정신병원</li> <li>-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li> <li>-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li> <li>- 서울특별시립개생원</li> </ul>

위 원 회	감 사 기 간	감 사 실 시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서울특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상이군경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li><li>-마포종합사회복지관</li><li>○가정복지국<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로부녀복지관</li><li>-마포부녀복지관</li><li>-노원부녀복지관</li><li>-남부근로청소년회관</li><li>-동부근로청소년회관</li><li>-부녀보호소</li><li>-아동상담소</li><li>-청소년사업관</li><li>-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li><li>-서울특별시립노인요양원</li><li>-어린이마을</li><li>-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li><li>-서울특별시립양로원</li><li>-서울특별시립영보자애원</li><li>-서울청소년회관</li><li>-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li><li>-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li><li>-서울특별시립엘림경로원</li><li>-지방공사 강남병원</li></ul></li></ul>

8 (第68回—第4次)

위 원 회	감 사 기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수자원관리위원회	1993.11.22~11.26	○하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사업소</li> </ul> ○한강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기술연구소</li> <li>· 수도자재사업소</li> <li>· 수도사업소</li> <li>· 정수사업소</li> </ul>
문화교육위원회	1993.11.22~11.26	○공보관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설위원회	1993.11.22~11.26	○도로국 ○종합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동부건설사업소 ○서부건설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
도시정비위원회	1993.11.22~11.26	○도시계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li> <li>·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li> <li>· 남산공원관리사무소</li> <li>· 녹지사업소</li> </ul>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교통위원회	1993.11.22~11.25	○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관리사업소</li> </ul>

위 원 회	감 사 기 간	감 사 실 시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정비사업소</li> <li>○지하철건설본부</li> <li>○교통방송본부</li> <li>○지하철공사</li> </ul>

II.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총괄)

소 관 위 원 회	시 정 조 치 사 항	건 의 사 항
계	557	243
운 영 위 원 회	7	10
내 무 위 원 회	21	12
재 무 경 제 위 원 회	29	24
생 활 환 경 위 원 회	36	27
보 건 사 회 위 원 회	11	17
수 자 원 관 리 위 원 회	16	33
문 화 교 육 위 원 회	26	15
건 설 위 원 회	95	21
도 시 정 비 위 원 회	195	48
교 통 위 원 회	121	36

III. 시정조치사항.....557건

■운영위원회

<시의회 사무처>

- 특위활동 공간등 의회내 시설의 합리적인 재배치 또는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 화기의 철거 문제 신중히 검토 조치요망.
- 대·내외 공문이 오래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속기록을 완결본으로 편철하여 배부요망, 늦게 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구내식당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치키로 결정된 바 조속시행 요망.

○업무 보고자료의 예산집행 내역중 세부 내역이 미첨부되어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사무처 근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내무위원회

<감사관>

- 감사자료는 구체적 내용을 제출할 것.
-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기능 철저.
- 입찰의 담합행위 철저히 감사할 것.
- 시체육회 보조금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할 것.

<p>○합리세정이 되도록 공시가와 시가가 접근하도록 조정할 것.</p> <p>○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권 일원화 검토.</p> <p>○시우회의 시설관리 문제 보완검토.</p> <p>○건축허가시 이웃돕기 성금의 폐지검토.</p> <p>〈내 무 국〉</p> <p>○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사단체끼리 통폐합 지원방안 강구</p> <p>○동사무소의 계제 실시방안 보완</p> <p>○자치구의 서울신문 구매 시정</p> <p>○약수터 관리 철저</p> <p>○동장 거주지 위주 임용</p> <p>○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민원해소</p> <p>〈민방위국〉</p> <p>○지하 대피시설의 다목적 활용방안 강구</p> <p>○관변단체장의 민방위교육 참여를 제고</p> <p>〈체육시설관리사업소〉</p> <p>○목동 빙상경기장 갱신허가시 의회동의 결여됨.</p> <p>(지방재정법 제27조 관련)</p> <p>○적자운영 개선 강구</p> <p>〈소방본부〉</p> <p>○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적 홍보</p> <p>○예방소방에 중점을 둘 것.</p> <p>○119 구급대에 구급전문요원 배치와 119 구급대의 보강.</p> <p>■재무경제위원회</p> <p>〈기획관리실〉</p> <p>○자동차 등록업무를 각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대장을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건물에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므로 등록대장도 각 구별로 이관하여야 할 것임.</p> <p>○도로율이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로확장 및 신설등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하철건설에는 과격적으로 재원이 배분된 반면 도로확장 및 신설 등에는 재원배분이 아주 미흡</p>	<p>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소득의 급신장, 그리고 시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세대별 1대소유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종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민 누구나 수궁이 가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지하철 예산안을 보면 지하철건설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대로 계속비로 편성해야 타당함에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된 것은 잘못이므로 앞으로 법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법을 개정건의하여야 할 것임.</p> <p>○소음방지, 맑은공기, 깨끗한 물 등은 쾌적한 환경의 기본이 되고 있으나 지하철, 각종 차량, 건설현장, 문명의 이기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청각장애, 정서불안, 소화기계통 질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p> <p>○건립한 지 20년이 넘는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소송사무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은 관리자들이 소송을 면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건별로 관련법규 및 대법원 판례 등 관계규정을 철저히 종합분석하여 제소 및 응소를 결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람.</p> <p>○보라매병원은 응급실과 영안실이 한 건물에 배치되어 있고,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벽면에 균열이 있는 등</p>
---	--

문제가 많음.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설할 때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설계를 해야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건설에 대한 설계심사, 시공감독, 감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강남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등이 확충된 상태에서 자치구가 되어 재정현안이 양호한 반면에 중랑, 성북, 은평, 관악구 등 강북 및 변두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구간 재정차이의 심화로 부익부 빈익빈이 깊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에서는 이와 같은 구간 재정차이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북 및 변두리 구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구간 재정수입의 균형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종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등은 시세로 하고 구간 수입의 형평성이 있는 시세를 구세로 하는 세제개혁을 하기 바람.

○심야영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불법 심야영업, 포장마차 등 노상 판매행위 등으로 야간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에서 각 구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기간이 길고, 공사발주가 늦어 후반기에 집중되는 관계로 인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이 오히려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연초 예산배정, 공기단축, 야간공사시행 등 최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각 구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멀쩡한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등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바,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소송패소 현황을 보면 '92년도 16건, '93년도 3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패소한 사건을 사례별로 심층분석하여 소송담당직원을 교육하여 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과천 서울대공원, 한강고수부지 등의 매점을 전대하는 행위가 많은데 앞으로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임대하고 전대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전자계산소)

○PC사용자 등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유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시력감퇴, 두통 등 V.D.T(Video Display Terminal)증후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자계산소에서 모니터 보안경 설치, 전산실 소음방지 유리칸막이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과학적인 근거나 임상실험 등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최근 전산기를 이용한 입시부정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처리에 있어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공단체의 주요업무(주민등록, 토지대장, 가옥대장, 재산세, 자동차세등)를 전산화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정부등 각 기관에 제공했을 때 목적 외의 이용이 우려되며, 또한 부당사용 및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확고하고 근본적



<p>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p> <p>(재무국)</p> <p>○시금고 자금운영에 있어 이자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제2금융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별로 자금을 운영하는데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결여한데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최저가 낙찰제로 1억이상 공사중 예정가의 50% 미만이 8건이나 되는데 이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방법, 공사감독방법, 감리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조세감면 처분이 32만건 496억원으로 이중 착오과세, 이중과세가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초래와 환불이자로 인한 시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p> <p>○'93년도 시유지 매각 목표 752억원중 실적 매각 수입은 289억원으로 목표의 3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인 바, 이는 수요자 위주의 판매전략이 아니라 판매 편의에 따라 매각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실 수요자가 원하는 면적으로 분할하고 또한 용도도 수요가 많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임.</p> <p>○체납시세가 지난 5년간 2,700여억원이나 되는 것은 징수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면도 있으므로 체납시세 징수 전담요원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바라며, 이미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주민등록, 토지대장, 재산세, 시세, 공과금등)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p>	<p>적극 활용하여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p> <p>○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이웃간,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200등급 이상에서는 등급간 세액이 10~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세표준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p> <p>○고액체납자인 성동구 광장동 대동화학(주)은 군수품 납품업체로 주민세를 1,161백만원이나 체납하고 있으면서 지난 '92년 10월경 공장부지를 400억원에 청구조합아파트에 매도하여 현재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며, 또한 회사명을 거평으로 변경하여 현재 매출실적이 좋아 상장된 주가시세가 1주당 35,000여 원인데도 계속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p> <p>○관리공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모두 추구하여야 하나 공사 설립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농어민등 출하주와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에 힘쓰고, 시장내 교통질서 확립과 상거래질서 유지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p> <p>○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형적인 도매시장으로 구상되어 설치된 시설이므로 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매상인을 점차 이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93년 7월 7일자로 체소증매인 정원을 560명에서 717명으로 증원 승인받았으므로 관리공사는 조속히 법인과 증매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정하기 바라며,</p>
---	---

또한 이에 따른 점포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것임.

○새벽에 출하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야간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을 운송하는 출하자 및 운전기사들을 위한 적절한 휴식시설(목욕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제대로 피로도 풀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공사는 적절한 휴식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람.

○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빨리 부패하여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주변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발생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처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화물차 및 콘테이너를 주차장 및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고 상품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생활환경위원회

〈산업경제국〉-농촌지도소·공업시험소·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 포함.

○도시가스 품질표의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재조정 및 간단명료한 품질표 제작 활용방안 강구

○도시가스 시공업자 난립과 횡포방지 대책 및 등록기준 강화

○실적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 강구

○도시가스 배관설치 중복굴착공사 방지대책

○5개 도시가스 회사와 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각종 부조리 척결방안 강구

○가스안전검사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도시가스 시설유자금 수혜대상자 확대, 선정기준 재검토 및 지원대책 강구

○중소기업 보육센터를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함으로써 설치 후의 매년 예산지원 문제발생, 그 대책은?

○대형백화점의 일방적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차인의 심각한 피해 방지 대책 강구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및 유명무실한 불이행업체 조치강화

○월동기 가스사고 방지대책 강구

○주유소의 무질서한 난립방지를 위한 허가기준 강화 및 민원해소 대책강구

○형식적인 부정 축산물 단속강화 및 부정유통 근절대책 강구

○불법·불량계량기 단속강화 및 부정계량 행위 근절대책 강구

○중앙부처의 획일적 책정에 의한 서울시 산업경제국 및 농촌지도소의 중복·유사한 기구·인력편제 재검토

○주유 메타기가 믿을 수 없으므로 검사 및 단속강화

○수준 높은 기능인력 배양·배출을 위한 훈련과정 및 교과내용 개선 등 운영방침의 근본적·전면적 재검토

○직업훈련원 명칭변경 검토

○직업훈련원에 대한 예산편성시 생활환경 위원회에 사전 보고후 편성할 것.

○직업훈련원 예산집행 내역제출

〈청소사업본부〉-난지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포함

○자원회수시설 건설 변경계획 등 중요계획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언론 보도할 것.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2년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의 예산집행 시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

○재활용품 재생산업체 육성 및 지원방안 강구

○PET병 등 플라스틱류 재활용 방안 강구

<p>○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운반차량 반입시간제 철폐 및 일반폐기물 분류기준 완화 등으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대책 강구</p> <p>○이동식 화장실의 규격, 설치기준 등이 미국식으로 획일·복사화되어 있어 우리 기준에 맞지 않고 예산낭비 초래, 규격과 모양이 다양하고 예산의 낭비없는 기준 재제정 추진할 것.</p> <p>○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의 적정·적법 선정방안 강구</p> <p>○환경미화원의 수거수수료 이외 별도 곱품요구 등 부조리 근절대책 강구</p> <p>○재활용품 수거체계 획기적 개선방안 강구</p> <p>○정화조 설치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을 제도화하고, 양질의 정화조 설치 재료(용기 등)의 보급방안 강구</p> <p>○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웃돈요구 등 부조리 근절대책 강구</p> <p>○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사업계획 조속 추진대책 강구</p> <p>○난지도 매립지 공기(대기)정화 방안 강구</p> <p>○가스포집시설 설치 운영방안 강구</p> <p>○위생처리사업소의 법무부로부터 유입되는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안 강구</p> <p>○위생처리장 탈수오니 처리대책 강구</p> <p>■보건사회위원회</p> <p>〈보사환경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p> <p>○시립용인정신병원은 조례를 위반하고 결산의 허위기재 등 제반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시정하고 위탁관계 해지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p> <p>○서울특별시시립병원수가조례의 수가 기준이 지난 88년에 개정된 이후 수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등으로 시립병원의 세입부실화의 원인이 되므로 수가 현실화 필요</p> <p>○민간위탁정신병원설치사업이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게 불공정하게</p>	<p>위탁되고 그 선정기준도 애매하며 사업집행에 과도한 불용액발생, 비합리적인 예산편성등을 시정</p> <p>○4·19토지 성역화 사업 중 서울시부담 토지매입비등 70억원에서 20억원을 국가보훈처부담 시설비로 전용하여 추경예산 승인대로 집행치 못한 것에 대하여 시정</p> <p>○이웃돕기 성금은 현행 “시민복지기탁금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입법화하여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운용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등 관리운영 방안 개선</p> <p>○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비의 3분의 2, 운영비의 2분의 1을 국고보조토록 되어 있으나 확보치 못한 바 이를 확보토록 시정</p> <p>○보라매병원의 부대시설(영안실, 은행, 구내매점등)운영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실화 시켜 재정자립에 기여토록 시정</p> <p>○'9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가 법정 기일내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기일내에 제출토록 시정</p> <p>(가정복지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p> <p>○장의업무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관리에 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일원화 시킬 것</p> <p>○서울청소년회관은 방대한 시설을 거의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임대업자의 계약기간 종료 후 동 시설의 운용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복지시설로의 변경이나 매각을 통한 이전 등을 강구</p> <p>○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수당 등이 월7만원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이를 증액하여 현실화시켜 종사자처우개선 시정</p> <p>■수자원관리위원회</p> <p>(하수국 소관)-한강관리사업소 포함</p>
---	---

<p>○감사요구자료는 감사 3일전까지 의원에 직접제출할 것.</p> <p>○행정사무감사자료내용이 부실하니 성의 있고 책임성 있게 작성할 것.</p> <p>○광진교 철거에 따른 잔재부력의 한강투기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p> <p>○올림픽공원변에 성내천임시수방대책으로 '91년 설치한 가제방이 존치되어 미관저해하니 조속히 정비토록 할 것.</p> <p>○난지 하수처리구역의 불명수유입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p> <p>○하수도사용료체납자대책강구로 세수증대에 노력할 것.</p> <p>(상수도 사업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포함</p> <p>○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p> <p>○노후관개량사업공사시 확인 감독철저로 공사부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요망.</p> <p>○사업소별 경영체제 확립시켜 유효수율 제고로 급수수익을 향상 시킬 것.</p> <p>○노후관 교체공사시 하수도관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p>○노후관을 개량하여도 누수율이 줄지 않고 있는 바 유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p> <p>○상수도 관계공무원의 대민친절봉사를 강화토록 할 것.</p> <p>○소출수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p> <p>○수도행정에서 시민생활편익위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p> <p>○우수한 수질검사요원의 확보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수질개선에 힘쓸 것.</p> <p>○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대책 마련으로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p> <p>■문화교육위원회</p> <p>(공 통)</p> <p>○사업추진등 업무수행시 좀더 적극적이고</p>	<p>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p> <p>○각종 공사발주시 입찰비리 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입찰비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정가격 유출 및 업자 담합 등 사전예방 할 것.</p> <p>○각 부서장은 공보관이 주관하는 시정 종합홍보물 제작계획에 의거, 홍보기법상 다량, 전문, 기술적 측면이 요구되는 환경, 교통, 맑은물 공급, 쓰레기 처리 등 홍보물 제작을 공보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p> <p>○정도 600년 사업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각부서장은 우리 문화재 홍보, 관광사업 지원, 민간참여 확대등 서울 600년 사업추진본부,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 공보관업무에 적극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p> <p>○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및 예산심사자료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도달 되도록 하여 자료 검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료요구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 할 것.</p> <p>(공 보 관)</p> <p>○여론조사 부문을 확대하여 환경, 교통, 수질, 쓰레기 처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여론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적극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이기주의 등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p> <p>○각종 매스컴의 오보 및 부정보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오보 및 부정보도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상설운영을 검토 할 것.</p> <p>○각국, 사업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작·배포되는 홍보물이 중복 또는 내용이 분산되어 예산낭비등 홍보효과를 기</p>
--	---

<p>대하기 어려움으로 홍보통합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홍보에 대한 다량, 전문, 기술적 측면을 검토조정하여 홍보효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것.</p> <p>○UN참전국 협회,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지회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출내용을 철저히 점검, 지원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p> <p>&lt;문화관광국&gt;</p> <p>○문예진흥 행사, 문화재복원 사업 등 사전에 전문기관, 심의위원, 전문교수 등 심의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도중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연구·검토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p> <p>○관광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부당요금 징수, 계약불이행, 퇴폐영업, 관광종사원의 불친절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서울 600년사업과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기해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할 것.</p> <p>○한국방문의 해 및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관광호텔 객실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p> <p>○공연장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소극장의 시설기준, 미성년자 입장, 영업시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할 것.</p> <p>○여행업자의 난립으로 여행질서가 문란해지고,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p> <p>&lt;세종문화회관&gt;</p> <p>○'92회계년도 결산심사와 '93년도 예산결산전망을 보면 세입이 세출에 10% 정도에 미치는데, 이는 문화창단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해가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장은 확고한 수지</p>	<p>개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100억원 이상의 수지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것.</p> <p>○세종홀 입찰시행시 많은 업체가 경쟁 참여하도록 하여 특혜의혹을 해소시키고, 계약조건을 과감히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p> <p>&lt;공무원 교육원&gt;</p> <p>○'93년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미집행액이 약 14억(30%)인바, 이는 소속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간주되므로, 원장은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p> <p>&lt;시립대학교&gt;</p> <p>○체육특기자가 입학후 퇴단하는 사례가 많은바, 입학시 인성검사 실시등 적임자를 선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p> <p>○서울학연구소 설치근거를 명확히하여 조례개정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p> <p>○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재점검하여 불우학생, 등록금문제 등으로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이면도로 개설공사등 각종예산 집행시 단위당 산출근거를 명확히하여 계수관리를 철저히 할 것.</p> <p>&lt;서울특별시교육청&gt;</p> <p>○각종 시설공사 시행중 잦은 설계변경, 공사지연등으로 공사비와 물가상승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차후, 충분한 설계검토, 능동적인 업무집행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차단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저가 낙찰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에 특별감리단 등을 구성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p>
---	--

- 기술직공무원의 현재인원 114명중 자격증 소지자가 50% 정도인 56명 밖에 없어 교육청의 많은 시설공사에 충실한 자체감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때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이 조속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산업기술·정보화 사회가 세계적 경제전쟁의 승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교육에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258개교 중 일반계 고교는 195개교, 실업계고교는 63개교로서 산업기술·정보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취약적인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겨우 '98년까지 24개교의 공고신설 등 미흡한 대책을 계획수립하고 있어, 이에 교육감은 대책이 시급함을 각성하고 '94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 전원 100% 취업할 수 있는 실업계 교육을 강력히 강화하여 학부모, 우수학생 스스로가 실업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 보고할 것.
- 학교건강관리소장은 부속위원의 검진·진료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많은 교직원, 학생이 활용(거리가 먼 학교는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학교에 출장 및 왕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그 실적이 가시화 되도록 할 것.

■건설위원회

<도 로 국>

- 도로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토록 조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 서울시 발주 공사업체의 점용료 징수에서 관급자재 이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철저히 징수할 것이며 체납한 시공업체(한보철강, 한보주택)등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필요하지만 예산을

- 소모하기 위한 신설공사는 지양할 것.
-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리를 시우회에 일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 확충이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 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것.
-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현 시장으로 바뀔에 따라 유명무실해졌고 결과적으로 35억원의 예산만 낭비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행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후 시행할 것.
- 프라자호텔에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시유지나 도로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여의도광장에 있는 자전거장, 롤러스케이트장, 유희자동차장 등을 특정인에게 점용허가 해 주고 점용료를 면제해 주었는데 점용료 면제를 취소하고 소급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조치할 것.
- '93년도 교차로 입체화 사업중 일부지역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하여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공사가능 여부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것.
- 도로상에 무단 적치된 적치물과 노점상 단속등은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먼저 계도를 한 후 철저히 단속을 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할 것.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서울시내 전체도로의 12%에 해당되며 심지어 30년이상 된 곳에도 아무 대책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도로개설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과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것.
- 도봉구 우이동길 보도정비 공사를 정복

<p>건설에서 도급 예정가가 3억3백만원임에도 40%인 저가로 1차 계약후 설계 변경하여 2,755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저가로 계약후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업무지침을 조례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비하고 시장의 지침을 남발치 말 것.</li> <li>○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감독할 것과 구청에 재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li> <li>○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조달청에서 발주는 공사를 서울시로 환원 조치토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것.</li> <li>○도로굴착복구 기금의 사용액이 42%에 불과하고 300억원 정도가 차기로 이월되는데 지나치게 많으므로 도로개설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바람.</li> <li>○감사에 대비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해 충분한 숙지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에 임하는 자세는 시정할 것.</li> <li>○'91.4.19 국무총리지시(제8호)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협약의 기피로 인한 제도정비 미비로 '92년부터 '93년 10월까지 약 330억원이 한국전력과 전기통신공사로 부터 도로점용료 미정수의 원인을 제공한 바, 명령체계와 위계질서 확립이 요망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으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정 바라며, 본건과 관련 서울시 자체감사를 통하여 철저히 공정정한 감사를 실시하여서 엄정한 명령체계 확립과 법질서 확립을 촉구함(명령불이행과 직무유기 문제)</li> <li>○도로 점용료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공문등 자료 요구를 허위로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li> </ul>	<p>후 의회에 보고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이 원칙과 기준없는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진행되다 중단되어 예산낭비와 시민을 기만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투자우선순위, 타당성, 재원조달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할 것.</li> <li>○4차선 도로변에 있는 학교등은 소음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계획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투명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li> <li>○도로불법굴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자는 고발조치등 단호히 대처할 것.</li> <li>○예산은 지난년도의 집행경험과 과학적인 통계 및 조사에 근거하여 편성토록 하고, 불용 또는 사고이월액은 시급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운용토록 할 것.</li> <li>○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것은 관리체계의 미흡에 기인하는바, 도로국내에 도로관리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li> <li>○강변도시고속도로 제1공구 시공부분중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부분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재공사를 하는 방안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ul> <p>(동부건설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바 예산편성을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li> <li>○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는 야간공사를 50% 이상 하도록 계획을 강구할 것.</li> <li>○구조물 보수공사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99.3%가 되어 업자와의 결탁의혹이 있으므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어떤 곳은 예정가의 42.9%에 낙찰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해</li> </ul>
--	---

<p>하자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93년도 유제아스팔트 구입시 예정가와 낙찰가가 일치하는데 입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예산집행 잔액의 활용계획과 사고이월액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바람.</p> <p>○동부건설사업소 인원 현황중 정원대비 6명의 기능인력이 부족한 바, 5~6명의 결원이 수많은 시민의 근로시간을 빼앗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p> <p>○기능인력 부족으로 장비 가동률이 평균 54%에 불과하므로 1인이 2가지 이상의 장비를 운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 인력 채용시 2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토록 할 것.</p> <p>○각 사업소 뿐만 아니라 동일사업소 관할도 노선별로 도로보수 덧써우기 공사의 면적당 공사비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울 것.</p> <p>○동부건설사업소의 '93년 주요사업실적은 71명의 직원이 인건비등 경상비로 23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장비 13종 37대로(현것가 12억원) 61명의 작업인부를 투입해(노임 약 5억원) 약 5억원 어치의 아스콘으로 도로소파 보수를 한 실적뿐임.</p> <p>따라서, 사업실적 결과를 볼때 동부건설사업소등 4개사업소의 통폐합등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소파보수를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거나 동부건설사업소와 도로국 또는 종합건설본부와의 통폐합도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상부에 건의할 것.</p> <p>○각종 추락방지시설 공사중 특히 천호대교의 경우 미관상 좋지 않고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미관도 고려하여 완벽하게 시공토록 할 것.</p>	<p>○구조물 보수공사에서 초속경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요업기술원에서 하지 말고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므로 그 방안을 검토할 것.</p> <p>○도로덧써우기 포장(아스콘)공사에서 코아 시험 검사결과 규정 두께 미달로 지적된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맨홀공사에 신공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의 견고성도 유지하고 작업시간도 단축하여 교통소통 장애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p> <p>○연주로 공사가 강남대로 보다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높은 이유는</p> <p>〈서부건설사업소〉</p> <p>○불량공사가 타 사업소보다 많고 맨홀 1개당 단가가 타 사업소보다 비싸므로 대책을 세우기 바람.</p> <p>○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야간공사를 50% 이상 하도록 계획강구 바람.</p> <p>○입찰업무중 관내 굴착복구 공사가 약 99%이면서 71명중 5명만 참여하였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요망.</p> <p>○도로 및 교량에 대한 재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p> <p>○도로관리상태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해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여 막대한 보상금이 지불되고 있는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EPO공법 이외에도 저렴한 공사비로 시간절약 및 안전도가 높은 대체공법이 있으므로 타 공법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하기 바람.</p> <p>〈시설관리공단〉</p> <p>○공단소유 견인차량은 민간위탁 견인차량 뿐만 아니라 경찰소유 견인차량보다 견인실적이 저조한바, 견인차량의 효율적</p>
---	---



<p>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자료는 성의를 가지고 작성할 것.</li> <li>○올림픽대로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실 적이 '91년~'93년간 총 309건으로 2백여만원 밖에 안 되나 예산은 매년 2억여원이 집행되고 있는 바, 계근소(검문소) 폐지여부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li> <li>○유료주차장, 장묘사업소, 유료도로등 각종 사업소 현장의 부조리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주차안내원 관리(감시)방법이 주머니를 뒤지는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개선책을 강구할 것.</li> <li>○예산집행 잔액의 활용계획과 사고이월액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바람.</li> <li>○지하상가 오염도 측정결과 특히 부유분진이 기준치의 9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li>○공원묘지 사용여유가 매우 부족하므로 용미리 군부대 점용부지의 조기회수 대책을 수립하고 화장장려 홍보방안도 강구토록 하기 바람.</li> <li>○어린이대공원은 매년 2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므로 유료입장객수의 증가대책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것.</li> <li>○남산 3호터널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정사건('93.9.25)과 관련 익일 근무조인 A조도 부정가능성이 추정되므로 조사할 것.</li> <li>○경찰이 운영하는 견인차 및 견인료는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도록 할 것.</li> <li>○지하상가 최초 임대 공고시 게시공고를 하였는데 향후 임대 또는 공실 점포 발생시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고방법을 개선할 것.</li> <li>○지하보도내 지하상가의 불법전대 및 위임경영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반환 조치할 것.</li> <li>○어린이대공원의 시설 보완으로 자체 수</li> </ul>	<p>입증대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주차 견인시 고의로 시간을 끌다 차주가 나타났을 경우 흥정등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어린이대공원의 '91년부터 '93년까지 동물사료 구입현황을 보면 2개 업체가 번갈아 낙찰되었는데 담합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찰방법을 개선할 것.</li> <li>○임직원의 결원 보충시 특채 긴급 충원하는데 하위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내부승진을 우선토록할 것.</li> <li>○'91년도 이후 전대한 지하상가 44건중 불법전대한 40건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하고 재발생을 방지할 것.</li> <li>○유료주차장 현장관리 인원의 주차료 징수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부조리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관리 인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고 주차료 고지서를 OCR 카드로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금수수료업무로 인한 부적정한 과다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li> <li>○신축사옥 공사장 및 각종 공사장의 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것이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강구하여 의혹을 일소할 것.</li> <li>○어린이대공원 새벽 산책시민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무료입장을 하는데 공원 수지개선 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해 볼 것.</li> <li>○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절약 편성하고 여유재원을 조성하여서 생상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li> <li>○각종 비리 및 부조리의 문책에 있어서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한정하지 말고 관</li> </ul>
--	--

<p>리층에도 감독 책임을 문도록 조치바람.</p> <p>○경쟁입찰 또는 사업발주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p> <p>○공단의 일부사업이 적자운영되고 있는바 개선책을 강구할 것.</p> <p>(종합건설본부)</p> <p>○'91.2.10~'93.10.13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중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11건 발생하였는데 특히 특정회사는 동일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였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입찰시 업자담합과 예정가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것.</p> <p>○하자보수를 줄이도록 공사감독 철저 요망</p> <p>○각종 건설공사에 하자발생이 많은 이유를 분석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는등 대책을 강구할 것.</p> <p>○조달청 발주 낙찰율(63%)과 자체발주 낙찰율(93%)을 비교하면 현저히 자체발주 낙찰률이 높는데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어 업자간 담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제도를 개선할 것</p> <p>○서초구청 신축공사, 올림픽대로, 남산1호 터널 반포천복개 공사등은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설계는 치밀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차질, 예산낭비등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하여서 설계가 자주 변경되는 사례는 지양되도록 할 것.</p> <p>○'94.12 준공예정인 가양하수 처리장 2차처리 시설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92.12 증설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사업계획을 1~2년 앞도 예측못한 것은 무계획한 것으로 시정할 것.</p> <p>○개인재산권 위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p>	<p>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밟아 시행할 것.</p> <p>○'93년 발주공사중 대림산업에 효자동 사랑방공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p> <p>○구로구 고척동에서 광명시계간 안양천 서측도로는 '93년 예산이 100억원으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경인고속도로지하차도 공사는 1989년 준공이래 5회에 걸쳐 보수했음에도 요철이 심하므로 하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수하여서 세금낭비 및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p> <p>○강변북로 확장공사(반포대교~용비교간)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시 신기술인 상관분절공법 공사중 일부 분절에서 균열의 발생이 지적된바, 감리·감독자의 책임과 배상금, 시공업자에 대한 조치, 보강 공사등에 철저를 기할 것.</p> <p>○우면한 남북간 터널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일반경쟁 입찰로 선진엔지니어링(주)이 97%의 낙찰률로 설계용역을 받았으나 (주)한국종합기술개발측과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중인 배경은</p> <p>○동일사항에 대한 자료가 요구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자료제출에 정확성과 성실성을 기할 것.</p> <p>○매년 반복적으로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p> <p>○정신병원이 한 곳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한 곳은 내년도로 사업전체가 이월되는데 대책을 강구할 것.</p> <p>○공사장에 철근등 건설자재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p> <p>(건설자재사업소)</p> <p>○생산성 증가 및 생산품의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p>
---	--

<p>○건설자재사업소의 이전용지를 확보하여 생산체제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아스콘의 외부유출에 대비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한 4개 건설사업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던지 아니면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기 바람.</p> <p>○사업소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복무자세를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소음분진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p> <p>○아스콘 반출대금의 회수에 역점을 두고 골재장비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p> <p>○사무실 및 임시작업장 7동은 가설건축물로 건립사용중에 있으나 항구적 건축물을 건립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할 것.</p> <p>○'93년도 세입 세출을 대비하면 세입은 세출의 65% 밖에 되지 않으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것.</p> <p>■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계획국〉</p> <p>○도시계획선 분할 및 건축허가시 일정한 법적 후퇴를 한 부분을 준공후 다시 원상대로 담장을 쌓거나 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토록 할 것.</p> <p>○도시계획선 저축부분에 대해서 지적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직권처리하고 세계 혜택을 줄 것.</p> <p>○광역자치단체인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p> <p>○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p> <p>○서울대공원 입구 경마장내에 골프장을 폐쇄하고, 무료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서울대공원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동작구 신대방동 460-1 공군대학 이전부지 토지 이용계획을 '94년 초부터</p>	<p>조속히 마련할 것.</p> <p>○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공원내 사행성 경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시행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할 것.</p> <p>○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유선방송사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인 바, 서울시 의견과 향후 대책은?</p> <p>○영동지구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개발조치로 균형 발전을 꾀할 것.</p> <p>○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으나, 지적 분할이 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당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국장이 최선을 다할 것.</p> <p>○지하공간 개발계획시 지하철공사 및 지하고속도로와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p> <p>○재개발사업 기금운영에 도시계획세 10%를 받는데, '93년 운영실적을 밝혀주고 기금은 예치만 하고 왜 사용하지 않는지, 사용목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p> <p>○재개발사업기금은 목적 분야에 사용해야 함에도 운영보다 적립에 치중하고 있으니 도심지 개발지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p> <p>○신규 개발되는 근린공원내 간이예식장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시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계획을 세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p> <p>○공원내 소나무 식재를 건의하며 예방, 보존 및 사후 관리대책을 세워 식재방안을 검토할 것.</p> <p>○신정동 농수산물 시장계획 해지건은 다년간 서울시가 계획발표하던 것을 변경한 것인데, 시책의 난맥상과 시정의</p>
--	---

<p>공신력에 불신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보아, 추후에도 도시계획결정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p> <p>○자료제공 지연 및 감사자료에 있는 수치가 업무보고서와 서로 상이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대책정 예산이 많다고 보아지는 바,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p> <p>○도시계획 구역분리로 인한 도시계획의 일관성에 지장이 있을텐데, 이의 대책은?</p> <p>○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지역의 대폭 확대 용의는?</p> <p>○남산 고도제한 지구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이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이를 철회 또는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p> <p>○결정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중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설치할 계획은?</p> <p>○예산심의시 철저한 계수 조정이 필요할 것임.</p> <p>○현재 서울시주변 산림에는 아카시아조림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는 수명이 20년이 지나면 고사할 뿐만 아니라 경관도 미흡하고 대기 정화능력도 적은 것 같으니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수종갱신을 해주기 바라며,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도 많이 심어주기를 부탁함.</p> <p>○30~40년전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필요함.</p> <p>분양 당시에 제값을 다 받고 토지주가 개발시 도로부지를 강제로 환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니 조속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임.</p> <p>○시청 이전설이 나돌고 있는데, 계획등설계를 확인해 보기 바람.</p> <p>○동물예방접종에 6억5천만원을 사용하면서 공해유발하는 서대문구 삼표연탄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바, 주민이 피해없</p>	<p>도록 하여 주기 바람.</p> <p>○녹지사업소의 무궁화심기운동에 과일나무도 동시 식재하기 바람.</p> <p>○사유지상 공원용지나 그린벨트지역을 무기한 묶어 둔다는 것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니 최대한 해제 요구</p> <p>○'92 지하공간 이용계획이 건설부 법제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p> <p>○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 등의 지침에 의할 것인지 자치구에서 주민의사가 담긴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인정할 것인지는 서로 상충된다고 봄.</p> <p>○시의회에서 의결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검토하라고 구청에 지시한 바, 이것은 풍치지구를 해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시 기본계획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의를 밝힐 것.</p> <p>○480억8천만원이 도시재개발기금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가 490억2천만원으로 9억4천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10월 보고에서는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다고 해놓고 지금 또 재정 투융자에 예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가?</p> <p>○기업금전신탁의 이율이 12.66%라고 했는데, 고금리에 예치하는게 정상인데 5% 차이나는 상업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관리인 관공비까지도 사용한 것은 잘못이니 시정할 것.</p> <p>○장기우대신탁에 대한 11월 15일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9억4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 잘못이라고 보며 관공비 지급은 잘못이다.</p> <p>○일반관리비는 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p>
---	---

<p>니 시정해 주기 바람.</p> <p>○서대문구 홍제동 산1번지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 9,481평을 서울시가 일괄 매입하여 점유자에게 불리한 것은 타지역의 민원처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처리의 법적근거와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불입치 않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대책은?</p> <p>○무궁화 식재수량이 자료제출시마다 상이하며, 무궁화식재사업은 구청예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지 그 이유는?</p> <p>○민자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 상이한 이유는?</p> <p>○'93 세입증 주차료 예산은 193백만원인데, 세입실적은 73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p> <p>○서울대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이므로 무리한 수입 확대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약수터 관리상 수질검사 불합격이 많다. 부적격 판결된 약수터는 폐쇄토록 할 것.</p> <p>○공원내 이동식 화장실을 '91년 21개, '92년 81개, '93년 6개를 개량하였는데, 이동식 수거식 화장실을 조속히 개량토록 할 것.(특히 북한산자연공원)</p> <p>○불암산자연공원과 청계산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2년에 걸쳐 불용되었는데, 추후 정확한 사전 자료수집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여사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구청장 위임법위 사무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p> <p>○'92년 사고이원 11건중 8건이 4/4분기에 발주되었는데, 12월 31일도 2건이나 있다. 향후에는 적기에 처리할 것.</p> <p>○공원매입비 5억원을 '92년에서 '93년으로 이월하였는데, 이유는?</p>	<p>○보라매공원내 토지보상의 필요성과 사유지 보상에 대한 대책은?</p> <p>○행정감사 제출년도별 보상금액이 각종 자료마다 상이하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할 것.</p> <p>○구단위 기본계획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시전체 입장에서 총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함이 바람직함.</p> <p>○도시계획입안결정시 현행상으로는 관보나 공고로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채, 진행 결정됨으로써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는 방법이 형식에 불과하니 앞으로는 토지주,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등기등 행정우편으로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니 시정 요구</p> <p>○조례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고 법 제63조에 재개발사업 목적외는 사용치 못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하위법으로 전용 사용한 것은 위법임. 재정 투융자기금을 통하여 기금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니 시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므로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는 적극 지원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p> <p>○기금이 도시재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길 당부드리며,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일부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으나, 도심재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적극적 자세로 공공시설을 일부 부담해 서라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p> <p>공공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p>
---	---

○도심 재개발사업이 대기업에 특혜의혹을 주고 있거나 않은지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살펴 보아야 하며, 재개발로 지정되어 적은 필지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없음을 빌미로 대기업이 매수해 사업하고 있으며, 매수한 후, 사업 미시행으로 땅 값이 상승함에 따른 대기업에 특혜의혹을 주고 있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시행자나 서울시가 안좋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앞으로 도심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

○학교용지를 결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시 산하 공원의 시설물 대부 위탁 관리 계약서식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각 공원사업소에 시달 사용토록 할 것.

○도시공원법 제27조, 동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여 공원내 편익시설인 매점의 명의변경 및 전대행위시 제규정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하기 바람.

○'93년에 준공된 바이킹 1기와 하이로라는 행위허가를 '90년 3월 23일, 착공일 '93년 5월 3일, 준공일 '93년 5월 27일이라고 하였는데,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받고도 1년내 착공을 앓을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되며, 과천시에 문의한 바, 이 내용과 상이하니 추후에는 이러한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동물부장에게 물졌는데, 돌고래쇼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여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인가?

시민의 정서생활을 위해 돌고래쇼는 지속하여 운영토록 요망

○운영과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람.

'93년 4월 7일 실시한 판매시설 73개소 입찰과정시 모든 기안용지에 과장결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입찰과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중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부분은 완전보상,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고도제한을 실시할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니, 일부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심재개발은 빨리 시행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며, 공원용지 및 주차용지를 확보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부진하며,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많으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도시재개발 방향설정이 안되었으면 공공용지 확보율이 30%나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며 불리한 투자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음.

관계법을 보면, 도시재개발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비용을 용자·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용자 사례가 한건도 없으며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봄.

지금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재정 투융자 기금에 위탁하여 불량주택재개발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불량주택재개발에 사용한 근거를 밝힐 것.

○월곡 근린공원(드림랜드)에 대형 부폐식당을 제3자 명의로 공원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시정할 것임.

○입찰공고와 재입찰공고는 중앙, 경제일보 등 2개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세입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서울대공원에서 시설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 성원개발에 12억 상당의 금액을

<p>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p> <p>○서울대공원 킹콩버스(7억원 상당의 재산)를 서울랜드에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p> <p>○서울대공원 '93년 세입이 26억원이고, 세출은 156억원으로 연간적자가 13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시민의 세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모든 공공사업 시행시 서울시와 체신부, 한전등 공공기관이 합의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여 개별 발주에 따른 교통등, 불편과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p>○남산 제모습가꾸기 일환으로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3층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구릉지는 3~5층, 높은 지역은 1~3층 범위내에서 현장 확인을 한 후, 지적 표시를 하여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p> <p>○남산 잠식시설 126동중 허가 당시 제 목적대로 정상 사용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 보고할 것.</p> <p>○대한중석 토지의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면적이 491㎡(약 149평)로, 도로포장비가 1억으로 과다 책정되었는데, 이는 대한중석토지가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고자 그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이 과대, 또는 축소 작성되었다고 보아지며, 특혜의혹의 시비를 불러올 우려가 있음.</p> <p>○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히고 20년 이상 미집행 부분은 면밀히 검토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 집행할 것.</p> <p>○과거 불합리한(행정편의주의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p> <p>○서울시에서 녹지지역을 잠식하고 있는</p>	<p>데, 향후 대책은?</p> <p>○'93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 23건중 10건만 고발조치하였는데,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형평성있는 행정집행을 할 것.</p> <p>○자치구에 위임되는 도시계획 업무중 용도지구, 지역지정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의 균형 유지에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업무수행에 유념할 것.</p> <p>○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의 업무 거부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휘, 보고하여 책임 추궁을 하여야 하며, 신입소장이 어렵다면 의회에서 감사 요구할 것임.</p> <p>○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 인가가 되지 아니한 사항중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시설을 한 경우에 당해 공원용지에 소유자에게 보상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p> <p>○드림랜드에 여러개의 식당이 있는데, 1,000명 이상의 부폐식당을 허가해 주었다.</p> <p>공원위원회에서 언제 결정되었는지 회기내 정확히 조사하여 재보고할 것.</p> <p>○도시재개발기금이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p> <p>'92년도, '93년도 전체사업비가 '92년 사고이월된 2천8백만원, '92년에 특별히 사업비로 책정된게 없고, '93년도 5천만원밖에 없음.</p> <p>도심재개발에 투자할데가 많은데 한군데 밖에 사용안한 것은 종로구청에 대한 특혜이며, 도시재개발기금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p> <p>○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므로 도시재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여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함.</p>
--	--

<p>'92년도에 수용비를 집행한 것은 20%에 불과하고 '93년도에는 3,988만원중 1,59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이 과다 계상되었음.</p> <p>다른 곳에서 써야 할 용역비가 기금을 유용해서 쓰는게 아닌가?</p> <p>○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단장 공석('92~'93년)은 부재중이라도 2년 가까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필요한 자리라고 보는데?</p> <p>○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하여 구에 시달한 지침서를 제출할 것.</p> <p>○재개발특별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데도 서대문구치소 부지 매입에 256억, 종묘주차장 조성에 146억원을 썼는데, 당시 김창배 국장이 사과까지 하고 '9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받겠다고 답변했는데, 256억원을 쓰고 연간 이자도 안되는 50억원씩 받아서 언제 다 받겠는가? 일반회계에서 356억 전체를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가?</p> <p>○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정기획단의 실적이 누락되었음.</p> <p>향후에는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바람.</p> <p>○22개구 구단위 기본계획 용역비가 최고 3억원에서 최저 4,700만원으로 구마다 상이한 원인을 밝혀주고, 지금까지 성과없는 부진한 용역사업을 현실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할 것.</p> <p>○분구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것.</p> <p>○'93.4.19 제62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 임시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불이행 이유를 밝혀주고, 주민 설명회부터 먼저 한 배경을 설명할 것.</p> <p>○드림랜드 위탁관리상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p> <p>○염창근린공원 진정에 따르면 토지주의</p>	<p>허가없이 인장을 도용하여 허가받았음에도 미 조치한 이유를 서류로 제시 요망</p> <p>○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먼저 요구하는 순서대로 준비되는 즉시 제출할 것.</p> <p>&lt;주 택 국&gt;</p> <p>○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지역 동장이 순찰적발 보고 업무만 하게 됨에 따라 차별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발행하게 되니 동장에게 동장직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에 따른 부정 방지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p> <p>○목동 인접지역인 신탄리 지구는 항공기 소음지역으로 주민불편 극심함.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p> <p>○상계 3지구가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것은 사업계획을 내주고 난 뒤에 장기간 착공은 못하였을시(3년) 양도소득세를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p> <p>○기술직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없는가?</p> <p>또한 출장비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강구바람.</p> <p>○'94년도에 건축사대행 건축물 50%를 점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 가능한가? 출장비 등 예산지원은 계획하고 있는지?</p> <p>또한 50%를 점검조사 할 바에는 건축사 대행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p> <p>○잠실저밀도 해제문제는 본건 청원채택건에 대한 회의결정이 타당성이 있음. 잠실지구는 88올림픽때도 교통량에 문제가 없었음.</p> <p>시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이니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p> <p>○남산의인 아파트가 당초 호텔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한 사항에</p>
--	---



<p>대한 제재는 하였는가?</p> <p>○시청된 신축중인 유진관광호텔은 불법건물로서 불법시공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었는가?</p> <p>○건축공사시 이웃간 진정에 의하여 종전 관행처럼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있으며, 진정처리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로 인해 규정에 적합한 건축에 대해서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적법한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공적자의 소신있는 처리가 요망됨.</p> <p>○도시계획국에 유진빌딩 설계도면을 요구하였음.</p> <p>유진빌딩 건축으로 인하여 고급공무원이 많이 희생당했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희생당했는가?</p> <p>또한 잘못된 부분의 시정조치 결과와 설계변경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를 하고 설계변경해 주었다면 그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p> <p>○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건물신축시 계획선에 물려 있는 땅을 내놓고 공사를 하면서 보상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봄. 개선책은?</p> <p>○'93년 7월에 주차장 건축법이 강화된 것으로 아는데 '80년 당시 법에 맞추어 준공한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p> <p>상가 건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각 구별로 잘못 인식(적용)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22개 구청에 일괄지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p> <p>○대형건물 위법사항을 고발안하고, 영세한 건물만 고발하는 것 같은데, 스위스 그랜드호텔 건물 불법사항을 고발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관련 통일된 조례나 규칙을 구청에 내려 보내기 바람.</p> <p>○신내지구의 보상 내용이 도시개발공사의 보고내용과 상이한 이유 및 존치지구</p>	<p>착오로 중대한 업무착오와 시세를 낭비하였음.</p> <p>○무허가 건물의 신규발생 이유와 이행강제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이며, 미정리 무허가건물 정리 대책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p> <p>○저소득층 용자지원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어 수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법을 개선하여 진정어려운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p> <p>○미준공 건물중 일시사용 허가 건물에 대해 법규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의의 위주로 처리요구</p> <p>○예술장식품을 설치하지 않았dah여 준공을 안해준 건물이 있는가?</p> <p>또한 같은 조건하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성균관대학은 1년, 강남병원은 3개월로 차별화 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p> <p>○육군사관학교의 공작물 설치 허가는 개발제한지역의 법적용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p> <p>○임시 사용 승인 건물 9개소에 대해 시세 정수토록 할 것.</p> <p>○잠실지구 저밀도해제 용역결과 시한을 앞당겨 줄 수 없는가?</p> <p>또 3, 4단지는 재건축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2,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바람.</p> <p>○잠실지구를 비롯한 10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밀도변경은 주무부서인 주택국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주민피해가 가중되는 주민 숙원사업이니 조속히 결정할 것.</p> <p>○매년 증가되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국과 각 구청별로 시한을 정하여 일정기간이 되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p>
---	--

<p>현 조치 무허가 건물은 조속정리 지침 마련 시행할 것.</p> <p>○가락지역에 184세대, 도곡동에 300세대 등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었는데 이 사람들 목적이 입주권 취득임. 이것이 체비지매각이 안되는 이유라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p> <p>○서울시 대형 불법건축물중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은 몇건이며, 이유는 무엇이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였는가. 불법 및 무허건축물에 대해 단수, 영업정지 및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것.</p> <p>○앞으로 시민아파트 건립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용자년한이 2년으로 너무 짧은데 5년으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가?</p> <p>○건축분야 부조리는 그동안 자정결의 대회등 노력을 많이 했으나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감리비율 건축주가 부담하는데 건축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등 권위주의적임.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도 100%하던가 아니면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던지 하기 바람. 건축사가 권리와 의무를 병행해서 갖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할 것.</p> <p>○건물건축시 주위에서 무조건 진정을 넘으로써 댁고물을 요구하고 있는등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음. 또한 건축법이 복잡하고 변경이 빈번하여 혼란스러워 건축사들도 잘 숙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 제도를 마련 할 것.</p> <p>○신투리지역은 '92년에 개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9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환경처에서 소음방지시설 설치조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집수리도 못하고</p>	<p>있는 형편임.</p> <p>○미준공 무허가 건물이 10~20년 방치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불이익을 받는 주택에 대해 구제할 계획은 없는가?</p> <p>○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도감독부서는 도시개발과인 것으로 알고 있음. 택지개발이 부진한 원인은 도시개발과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 됨. 실례로 미매각 택지가 수서지구 버스정류장 용지등 총 185억으로 추정되는데 영세시내버스회사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p> <p>○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토지수용부터 고가로 매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p> <p>○'91년을 기준으로 택지가격이 상승되었음. 주무과는 도개공에 미루고 도개공에서는 대행사업이라고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도개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바람. 육사와 협의 결정했어야 함에도 신내지구를 14개월간 방치한 것은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봄. 공릉2지구는 신내보다 어려운데도 주민의 힘으로 풀지 않았는가?</p> <p>○일반지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한 경우가 있는가?</p> <p>○위반 건축물에 대한 재조사 지시한 결과 68건중 27건이 하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건별로 파악 서면 보고하기 바람(착공·준공 이전과 이후).</p> <p>○연서분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하자가 있는데 비연서분은 하자가 더 많다고 본다.</p>
---	---

<p>'93년도 비연서 전체분을 송과, 중랑구에 지시하여 '94년 3월말까지 조사 보고하기 바람.</p> <p>○조사담당관에게 물졌음. 22개 구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가? 있으면 몇번이나 감사를 하는지, 금년 감사한 것을 서면 제출하기 바라며, '93년도 중랑구청 비연서분에 대하여 조사 제출하기 바람.</p> <p>○충정 1-3구역 사업시행자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뢰서는 서울시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유도작성되었으며 박상기 변호사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본인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시정되었으며, 구청별로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데 국장의 견해는?</p> <p>○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방향 제시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신속 제출바람.</p> <p>①'92~'93년도중 서울시가 원고·피고가 되어 소송중인 자료일체와 변호사 비용내역, 판결문, 소장, 진술 등</p> <p>②'92~'93년도중 서울시가 변호사에 자문요구한 의견서, 자문수수료 현황</p> <p>③'92.11.5 행정감사시 분양가 질의에 대하여 당시 국장이 경제기획원에 건의·시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회의횟수와 경제기획원과의 논의내용 서면 제출</p> <p>④'91.11.28 행정감사시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의견도 듣지 않고 기부채납 인가 조건 책정하여 사업을 검토하면서 구 제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서면제출</p> <p>○신경제 5개년 계획중 40만호의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정부시책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5년전 주택난 해소책으로 200만호를 건설한다하여 전자재파동등 불황의 원인</p>	<p>이 되었는데 국장은 사업시행시 이러한 문제점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건축사 조사대행중 위반한 건축사 처벌이 가벼운데, 건축직공무원이 같은 건축관계라고 해서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p> <p>○벽산아파트, 삼부아파트, 사당동 극동·우성아파트 가사용 승인이 '92년도에 났는데 준공예상이 '94년 6월로써 2년 전에 가사용 승인한 것은 특해야닌가? 또한 임주자가 잔금을 다 내고도 등기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p> <p>○신내 택지지구 보상대상 52동중에서 48동은 보상을 했고 4동이 정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도개공 자료에는 15동만 보상되었다고 하여 차이가 있음. 또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는?</p> <p>○신내지구에 임시사용 건물이 9동 있는데 세금징수는 되었는가? 또한 육군사관학교에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서 특수훈련장 기능유지가 목적인데 타당한가?</p> <p>○앞으로 존치지구의 상당부분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존치지구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하기 바람. 지역여건을 조사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공동·단독 모두 개발할 수가 없음. 주변보다 택지비가 월등히 높는데 매입해야 될 경우가 많음.</p> <p>○7월 30일자 중앙일보에 택지개발지구내 시영아파트는 민영가격의 75%로 분양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가? 공릉1지구 시영아파트는 18평 이하가 평당 370만원이 예상되며 인접 우성아파트는 평당 280만원으로서 간접시설비를 빼도 가격이 높다.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여 가격을 낮추기 바람.</p> <p>○단란주점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택국의</p>
--	---

의견없이 더군다나 도시정비위원회의 협의없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봉천 2-2, 3구역 재개발지구 학교용지 위치는 적절한가?

또한 재개발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가?

표준건축비에 의하면 일정 용적율이 넘으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합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관에서 철저히 가려서 시정조치 하기 바람.

○1회 민원 방문처리는 형식적 처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건축지도과는 각구외 건축행정 처리실태를 파악 개선하기 바람,  
각구 건축허가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사조사 및 검사 대행 건축물의 협의부서 처리기간을 사실대로 파악 자료 제출하기 바람.

○일반인들이 짓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개념에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20가구 미만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을 30가구 미만 4층 이하(1층 전용주차장 개념 폐지)로 하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 준공시 침부하는 현황측량도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생략할 것.

○2,000㎡이하 소방협의회 파견된 소방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이 관할 소방서에 가서 결재를 받는 관계로 3~4일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지연되니 개선책을 강구할 것.

○시영아파트 건립 분양시에 주변의 민영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25% 정도 낮게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미흡

하므로 좀더 구체적이고도 실현성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90년 수서지구 분양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가 발생하였는데 시공한 건설회사는 조치하였는가? 이러한 부실시공회사는 다시는 도개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도시개발공사〉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

○보훈복지공단에 50%, 일반에 50%로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균형을 보훈복지법과 중소기업진흥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상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은 예산, 법령, 주민의 보상과다 요구, 해당 구청의 비협조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주요 원인이 어떤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기 바람.

○상가의 분양, 미분양(임대상가 포함)원인을 분석하여 서면제출하기 바람.

○도시개발공사 기능이 민간 사업체에 가까운 만큼 이 기능을 최대한 살려 사업체로 전환, 수익을 올려 다시 환원하는 방식의 운영체제를 요함.

○아파트 승강기의 관리를 지정업체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업체가 매달 관리비만 받고 관리부실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

○건축시 많은 자재를 사용하는데, 완벽한 자재를 사용한다고 보는가?  
타일등 함량미달 자재에 대한 대책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92년 4월 하복지급 내부방침 결정시 1년이하의 직원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임. 그 이유는?

○'90~'93 감사원의 서울시 도개공에 대

<p>한 감사자료를 보면, 징계 및 주의경고 77건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됨.</p> <p>부하직원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책을 연구해 본적은 있는가?</p> <p>또한 재발방지에 비중을 두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할 것.</p> <p>○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부실한 경우가 많으며, 주민들은 시간만 끌면 가격이 오를거라는 기대심리와 재결을 하게 되면 20~30% 협의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p> <p>○연체 건설업체 관리철저를 향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대책할 것.</p> <p>○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데, 차후 철저한 검토로 성실히 자료 제출할 것임.</p> <p>○주택공급 규칙 제20조의 2에 의하면 입주후 분기 1회이상 입주실태를 조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3항에 의하면 위반한 자는 즉시 퇴거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적발된 자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기 바람.</p> <p>○수석지구에서 비닐하우스 영농행위를 계속한 원주민에게는 이주대책용 상가분양권을 당연히 주어야 하나, 임시 이주자의 대책으로 입주권을 주는 것은 투기 조장이 아닌가?</p> <p>○방화지구 상가입찰에 예정가의 99.3% 수석지구 상가입찰에 예정가의 99.9%로 낙찰된 것은 사전에 담합 내지 정보의 사전 유출이 아닌가?</p> <p>○노원구 월계3지구 문병호 토지의 7필지를 주택개발지구로 잘못 알고 토지보상금 10억5천7백7십만7천원을 지급하고, 신내지구 54동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p>	<p>는데도 건물 15동에 대한 보상금 373억원을 잘못지급하였으며, 강원산업 골재를 보상하면서도 2억8백14만7천원을 잘못 보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p> <p>○경리부장 김영진은 1년에 3번이나 징계되었는데 영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인사의 난백상이 아닌가?</p> <p>○신내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육사군약대, 군마대이전에 소요되는 약 30억원을 간접 보상한 것은 공특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보상한 선례가 있는지?</p> <p>○신내지구는 택지매각 계약시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용적율등을 감안 가계약인 계약서에 따라 택지매각 대금을 받고, 변경승인등이 최종 확정된 후, 본 계약을 체결 청산하기로 되었는데 9개업체와 택지매각 협약을 체결하고 11단지 동성주택만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머지 업체와 본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p> <p>○신내지구의 북부간선도로 토지보상과 지구내관통 6호선 지하철공사 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함으로써 조성원가를 상승케 하여 입주민에게 세대당 약 6백만원의 부담을 주게 되는데, 서울시의 일반회계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선시설 및 지하철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p> <p>○신내지구 존치지구 보상금을 환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상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기 바람.</p> <p>○'93년도 4개 사업지구를 년도말에 발주하는 것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공사계약을 년말에 무더기로 발주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p> <p>○용지보상을 하는 직원은 중요한 자리라 전문성이 필요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선</p>
---	--

<p>정할 것이며 용지보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직영아파트관리에 들어가는 인원, 비용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기 바람.</p> <p>○15억원의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공사입찰을 조달 발주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만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p> <p>○재무부의 통첩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정가 5개중 2개를 택하여 평균산술치에 의해 예정가를 결정 입찰하고 있는바, 공사에서도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는?</p> <p>○수서지구 철거민을 위한 임시 가이주단지시설 화재 인명피해 및 불법 가이주 시설물에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은?</p> <p>○신내지구는 철거후 지구내 195세대가 이주할 데가 없어 지구내에 가이주시설을 만들어 불법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p> <p>○신내지구 주민요구에 의해서 보상이 잘못 나갔는데, 아직 환수 못하고 있고 공릉동 30억 사기당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p> <p>○아파트형 공장은 얼마나 건설하였으며, 미분양 현황 및 부진사유?</p> <p>○아파트형 공장의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공급요건을 완화하여 장기할부로 공급해 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가격 현실화로 소득 증대를 요함.</p> <p>○공사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 평당단가가 월계 5지구는 1,160천원, 월계 6지구는 1,932천원인데 인접한 2개지구의 보상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차이를 적게 하여 주택분양가 평균화를 요함.</p> <p>○지급 자재는 하자 보수시 지연사유가 되며 관리 및 인력운용등에 문제가 있다고 봄. 그러나 도급으로 하였을지는 하자보수등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되는</p>	<p>장점이 있는데도 예산이 10%정도 절감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p> <p>○택지개발지구의 컨테이너 박스, 가설물을 보상하여서는 아니됨.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한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것은 용지비가 비싼 것이 원인이 아닌가? 보상업무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p> <p>○도개공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 출장비등을 지급하여 신명나도록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서면 제출할 것.</p> <p>○잡은 설계변경으로 원가가 상승됨. 가양지구 최초설계에서 우수관로를 포함하여 설계치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토목 설계변경 현황을 구체적인 사유를 붙여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설계전 및 설계시 철저히 준비를 하여 설계변경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p> <p>○택지개발 계획수립 및 설계시 사전에 각종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지 못하고 설계부터 착수, 잘못을 초래하였음.</p> <p>○거여동 산52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 및 법적 근거는? 임야는 평당 210만원, 도로 410만원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상식적으로 잡종지보다 임야의 공시지가가 높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함. 그 이유는?</p> <p>○거여지구의 내무부, 건설부 지가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p> <p>○신내지구 택지보상비가 당초보다 지가상승으로 3,000억원이 증가하였음. 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 도개공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 것 아닌가?</p> <p>○미매각 택지현황 및 수서지구의 미매각</p>
--	---

<p>용지현황을 예정가 포함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p> <p>○서민주택을 건설하여 열가보급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도개공사육신축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빌딩을 지어 임대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p> <p>신축 사육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수서지구 택지개발공사에 있어 설계가의 약 73%로 낙찰되었으나, 예정가에 대하여는 몇%로 낙찰되었는가?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업자와 결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당초 설계가 보다 높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p> <p>○모든 발주공사중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공사가 낙찰자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을 수차례씩 하여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게 되므로, 경쟁입찰의 본 뜻이 소멸되니 설계시 정확한 현장조사로 정확히 설계할 것.</p> <p>○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평가사에게 지침을 준다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겠으며,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게 큰 평수의 아파트를 주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p> <p>기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분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좀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p> <p>○신내지구 관련 보상비가 3,000억이나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본인이 알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당해지구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가?</p>	<p>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p> <p>○택지개발지구내에 지장물은 전부 매수해야 하는데, 존치시설은 왜 하는지? 앞으로 존치 시설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기 바람.</p> <p>○수서4단지 수서지구 이주대책용 전용면적 25.7평의 분양아파트가 이주대책자에게 공급되었다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자료를 서면 제출하기 바람.</p> <p>■교통위원회 (교통국)</p> <p>○버스전용차선제 확보를 위하여 경찰과 협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p> <p>○의회에서 승인한 지하철공사 출자금중 현재까지 미출자한 90억원을 지급할 것.</p> <p>○지하철공사에 출자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결산승인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부터 별도 편성할 것.</p> <p>○버스·택시의 과징금 및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에따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p> <p>○교통혼잡 해소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p> <p>○지하철공사 임원 인사시 외부의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발탁할 것.</p> <p>○모든 교통정책 시행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 설명회를 갖는등 의회를 존중하는 제도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조치.</p> <p>○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에서 자료요구시 각종 통계자료 및 예산계수등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할 것.</p> <p>○법인택시를 줄이는 대신 서비스가 좋은 개인택시수를 늘리는 방안을 수립할 것.</p> <p>○공무원의 착오부과로 시민의 불편이 증대되므로 이에따른 부과행정 개선방안을</p>
---	--

<p>강구하고 환급조치도 신속히 처리하는 행정대책을 수립할 것.</p> <p>○주차위반과태료 징수수입은 주차장설치 등에만 사용토록 조치할 것.</p> <p>○100일 대책기간중 주차단속건수에 비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구마다 건수위주의 경쟁식 단속이었으므로 앞으로는 지양하고 대신 징수실적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공사의 보수체계가 불합리하여 사장 보수가 임직원과 대비하여 낮은데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p> <p>○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면서도 지출하지 않는 등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은 100%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p> <p>○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지급이 불합리하니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p> <p>○제2기 지하철공사 결정시 현 지하철공사 노조와의 사전교감이 없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공사 분리운영에 따라 승차권 반환 불편사항등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새로이 신설되는 제2기 지하철공사에서는 현 지하철의 시민불편 사항들을 보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p> <p>○버스차고지가 부족하여 노상주차가 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방안을 강구하는등 차고지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p> <p>○건물내 주차장이 완공검사후 임의 용도 변경되어 사용중이므로 인근도로에 주차시켜 교통체증의 유발원인이 되는데 철저하게 단속하여 본래의 용도로 화원조치할 것.</p> <p>○소방도로변의 불법표지판 및 시설물등을</p>	<p>조속히 시정조치할 것.</p> <p>○모범택시가 도로변에 장기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단속을 강화할 것.</p> <p>○각종 시설물의 제거조치(전선의 지하화 등)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것.</p> <p>○년초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p> <p>○시민의 세금으로 시설한 환승역주차장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용을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인근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p> <p>○한전의 전선주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것.</p> <p>○2000년대의 수송체계 변화후의 교통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장·단기계획을 정확하게 수립 시행할 것.</p> <p>○시민이 이용하는 입석버스의 노선준수 여부 및 결행, 운휴 등 불법운영에 따른 불량업체를 행정조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p> <p>○각양각색인 마을버스의 차종과 차색을 조화있도록 최상의 방안을 강구할 것.</p> <p>○33,000여대의 무적차량이 완전정비되도록 고발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p> <p>○이면도로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p> <p>○정확한 투자재원을 사전에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p> <p>○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화로 기존 업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니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p> <p>○현재의 이면도로 주차방법을 외국의 좋은 사례를 도입하여 개선 조치할 것.</p> <p>○모범택시의 지능적 횡포에 따른 불법요금징수등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p> <p>○택시도급제 및 지입제의 근절방안 강구요망</p> <p>○2차선도로변 및 아파트 진입로에 주민</p>
--	---



<p>들이 임의로 설치한 요철시설은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되므로 철거하는 대신 교통안전표시 시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마을버스 허가자와 운영자의 동일여부를 조사 단속할 것.</p> <p>○지입제 및 도급제 택시의 근절방안과 승차거부, 승객 골라태우기등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p> <p>○차량통행량 조사시 영등포역앞등 실제로 교통난이 심한 곳을 선정 조사할 것.</p> <p>○교통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체계를 강구할 것.</p> <p>○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TSN사업에 대하여 교통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p>○규정 위반된 횡단보도 및 좌회전 설치 허용 지역을 조사하여 정비할 것.</p> <p>○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p> <p>○현 지하철공사에 문제점이 있어 제2기 지하철공사가 신설되므로 인한 현 공사의 문제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건설본부)</p> <p>○지하철 6~8호선 공사구간 입찰결과 예정가격의 45%에 낙찰되었는 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p> <p>○지하철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p> <p>○개착구간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확인 감독할 것.</p> <p>○의원에게 제출되는 자료 작성시 계수확인등 착오가 없도록 성의를 다하여 작성할 것.</p> <p>○금년도 세입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제2기 지하철공사의 공기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에따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것.</p>	<p>○성남구간 건설비중 정부지원금 450억원이 용자지원되고 있는데, 당초 약속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것.</p> <p>○지하철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시 시민의 세금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행할 것.</p> <p>○지하철건설공사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p> <p>○수년동안의 지하철건설 경험을 살려 시공후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할 것.</p> <p>○제2기 지하철건설의 예정가 및 낙찰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예정가를 사전유출한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의혹이 불식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p> <p>○지하철공사중 보행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가 무단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p> <p>○지하철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p> <p>○공무원의 전문성결여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p> <p>○제3기 지하철 노선이 지역적으로 편중 건설되지 않도록 교통불편지역 및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경전철을 사전에 건설하는 등 해소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p> <p>○일시에 많은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감독관 및 기능공부족, 자재과동, 품질관리의 소홀등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공사 감독관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잦은 설계변경에 매달리고 있어 공사감독의 소홀함이 예상되니 이에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공사에 따른 보상부진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p>
---	---

<p>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기 지하철공사의 저가낙찰업체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li> <li>○수도권 전체의 교통인구를 정확히 예측한 후 지하철을 건설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li> <li>○지하철건설공사 경험이 없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구간은 유경험 감독관을 배치하는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li> <li>○지하철공사가 지연되어 월동기간중에도 주택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철거대상자가 세입자 및 서민주택임을 감안, 강제철거보다도 협의등을 거친후 시행토록 조치할 것.</li> <li>○지하철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부품중 외국제보다도 국산품을 사용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li> <li>○동절기에 대비한 지하철공사 안전시공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li> <li>○지하철건설공사 사고다발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li> <li>○지하철공사 감독관중에 무자격자가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것.</li> <li>○지하철공사의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li> <li>○예산만 확보하고 많은 불용액을 이월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자세를 시정할 것.</li> <li>○지하철 건설공사중 공기보다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공사관리를 할 것.</li> <li>○지하철 6호선이 최저 낙찰가로 낙찰되었으므로 더 많은 감독관을 배치하는등 부실공사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5호선 42공구건설 문제점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5호선 54개소 공구중 민원 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결 공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사고다발업체 5개 회사에 대한 안전사고 해소방안을 수립할 것.</li> <li>○지하철건설 시공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li> </ul> <p>(지하철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도록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li> <li>○노조를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하철의 안전 및 승객서비스 향상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 실시할 것.</li> <li>○지하철역사의 공기오염도 완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할 것.</li> <li>○현 공사역무원 월 근무일수가 4조3교대 19일로서 외국의 경우보다 근무일수가 적은데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공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 최상의 방안을 강구할 것.</li> <li>○외국산 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국산품 자동제어장치(ATC)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li> <li>○전동차 고장시 대기중인 차량에서 부품을 임시전환하지 말고 항상 재고수준을 파악해서 예비부품을 확보할 것.</li> <li>○근속호봉 역조현상을 해소하고 이에따른 불이익을 시정조치할 것.</li> <li>○지하철의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li> <li>○노사가 서로 화합·협조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li> <li>○공사 임원진과 부장급간의 임금격차가 있으니 임원봉급 증액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li> <li>○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사장이 직접 서류를 챙기는등 충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역 승강장에 공중전화를 호선별로 균등하게 확대 설치할 것.</li> <li>○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내에 설치된 지하철노선도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새로운 수도권 지하철노선도를 부착 설치할 것.</li> <li>○해외연수시 안전담당분야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연수후 결과를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li> <li>○지하철 정액권이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문제로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데에 따른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를 정밀진단코자 출근시간에 원시적인 방법인 5분간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이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구조물 안전상태 및 노후시설의 점검실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동차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li> <li>○무임승차 방지 및 잡상인 단속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간제 노인봉사대를 운영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니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1호선 제반시설의 노후화로 타호선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2기 운영주체가 분리 발표됨으로 인하여 노조의 악영향이 예상되니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li> <li>○현재 운영중인 9명의 안전점검 요원으로는 전 호선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니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전 요원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지도할 것.</li> <li>○합동정밀이 계약한 역무자동설비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것.</li> <li>○최근 급증되고 있는 지하철역 범죄에 대하여 경찰과 협조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li> <li>○금년도 시출자금중 미세입된 잔액을 시에 요구하여 세입 조치할 것.</li> <li>○제2기 지하철 운영권이 현 공사의 관리능력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방안을 강구할 것.</li> <li>○'93년도에 계획된 투자사업중 부진 및 사업보류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li> <li>○지하철 1호선~4호선등 호선별로 운영경영상태를 분석 조치할 것.</li> <li>○자동개집표기 과부하 및 열차 지연등으로 인한 승차권 반환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li> <li>○인사불만에서 오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점검 소홀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li> </ul> <p>(교통방송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시 교통정체 상황만 계속 보낼 경우 듣기에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니 “자연의 소리” 등을 만들어 시민이 부담없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li> <li>○교통방송 편성시 흥미위주의 방송을 지양하고 운전교재 및 운전경험담등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내용과 교통기상정보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등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li> <li>○시민제보 및 리포터등 인력에 의해서만 방송이 운영되는데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보를 수립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li> <li>○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시 교통위원회와 사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li> <li>○교통방송내용의 단순화로 운전자들에게 교통전문방송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으니 고가치의 방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li> </ul>
--	---

<p>○'94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는 대신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으로 부채가 발생되는데 따른 융자금 상환대책을 강구할 것.</p> <p>○횡단보도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 제거에 대한 홍보방송 계도를 실시할 것.</p> <p>○전직원이 맡은 업무를 정확하고 밀도있게 파악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p> <p>○예산확보를 위하여 본부장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할 것.</p> <p>○교통방송 구성원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것.</p> <p>○교통방송본부의 관료주의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예산의 부족으로 양질의 방송을 송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p> <p>IV. 건의사항 ..... 243건</p> <p>■운영위원회</p> <p>○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p> <p>○방청을 제고방안 연구검토 요망</p> <p>○각종 주의회이나 행사등 의회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사전협의 또는 결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것.</p> <p>○의회발전 측면에서 각종 정례·비정례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p> <p>○집행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시 늦게 도착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p> <p>○의회사무처 직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5개특위 지원방안 등 검토요망 -업무배분의 합리화·직원보강·공보실기능확대 등</p> <p>○의회직원중 일부직원 이외에는 제복이 없는 바 복장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p> <p>○시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집행부등 관계부서에 건의요망</p>	<p>○관련안건에 대한 상임위별 연석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요망</p> <p>○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연구·검토요망</p> <p>■내무위원회</p> <p>(감사관)</p> <p>○기금운영에 있어 이자 극대화방안 강구</p> <p>○공해업소 감독철저</p> <p>(내무국)</p> <p>○시우회 위탁관리사업은 공개입찰에 의할 것</p> <p>○자생적,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p> <p>(민방위국)</p> <p>○세대별로 교육내용을 다양화할 것</p> <p>○양천구 교육장은 양천구 관내로 바뀌 줄 것</p> <p>○민방위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진국 민방위제도의 견학 추진</p> <p>(체육시설관리사업소)</p> <p>○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p> <p>○목동 테니스장 환수방안 강구</p> <p>(소방본부)</p> <p>○시립소방박물관 건립방안 연구</p> <p>○제도적 미비점의 발굴 건의</p> <p>○119와 129의 단일화 방안 강구</p> <p>■재무경제위원회</p> <p>(기획관리실)</p> <p>○도로의 확장이나 건설은 지지부진한데 비하여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갈수록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확장과 신설, 그리고 주차장 건설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의 생산, 판매 및 운행등과 관련된 국세등을 지방세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임.</p> <p>○일부 외국(콜롬비아)에서는 공무원 봉급이 일반기업체보다 많아서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p>
---	--

<p>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불법행위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각 지방별 생활수준이 현격히 다르며,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서도 각 지역별 일비, 숙박료 등이 달리 책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봉급수준이 벽촌·산간 공무원의 봉급수준과 같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공무원의 봉급을 적어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주기 바람.</p> <p>○가회동 전통가옥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지어진 한옥이며, 또한 무허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전통가옥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잘못이었으며, 또한 현재 서울시 전역을 볼 때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도시로서의 특징이 전혀 없고, 지역별·가로별 특징적인 건축양식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 600년 사업을 계기로 특색있는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 <p>○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 사용료 수입은 70여억원 정도이고, 이중 인건비등 관리비 30여억원을 제외하면 실수입은 40여억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시민이 100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차량적체 및 감속으로 인한 제비용으로 550원 정도의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료도로 사용료 제도를 폐지하거나 도심 교통소통의 완화 기능을 하는 일부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0~1,000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94년도 예산중 지하철에 배정된 재원은 시비가 2조 1,078억원, 정부보조가 2,480억원, 그리고 용자가 1,000억원으로 되어 있음. 당초 정부에서 4,500억</p>	<p>원 정도를 보조하기로 약속하고서 2,480억원만을 보조하는 것은 서울시의 대정부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기반시설 투자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기 바람.</p> <p>○독섬체육공원은 사유재산으로서 골프연습장, 골프장이 있는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경영의 역점을 두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 관계규정, 시에의 기여도, 그리고 자생능력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민이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선의 방법은 각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p> <p>○시투자기관 중 2개 투자기관(강남병원, 지하철공사)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퀵서비스가 첫발을 디딘 곳이 시카고인데 400주년 행사때 시와 시민이 함께 했기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음.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 600년 사업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사·문화·환경·도시구조 등에 역점을 두기 바라며, 또한 시예산 사업만으로 600년 사업을 수행하려 하지 말고 기업가, 독지가 및 첨단분야 사업가 등을 참여시켜 서울시가 21세기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케 하여야 할 것임.</p> <p>○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때에도 10억원 이상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며,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공사 등 입찰시 부정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p>
--	---

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조달수수료를 지불해 가며 계속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니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 및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많은 불법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철거 및 벌과금 부과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위직공무원의 비리도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우선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부정한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면 시민들도 법의 위반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 온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쓰레기 수거료가 통합공과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제때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콘테이너 박스 주변도 지저분하게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으므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지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과 쓰레기 수집운반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료도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 수거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바람.

<재 무 국>

○과세표준액 현실화율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등급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세저항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정부등 관계기관에 세율조정 등을 건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올바른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바람.

○국세와 지방세간의 납부시기가 비슷하여 시민이 일시에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

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납부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실명제로 '93년 9월말 현재 세입이 1조 8,457억 원으로 목표대비 6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전망이 목표대비 93%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액채납자 등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을 기다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짚형승용차는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차체 중량으로 도로를 더 파손하고, 대기오염도 더욱 유발하고 있는데 전시동원 차량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액을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한 것은 비현실적임으로 정부등에 강력히 건의하여 바로잡기 바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가락도매시장은 물동량, 이용인원, 출입차량이 개장 당시에 비해 300% 증가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제는 처리능력에 한계에 달하여 1일 7,280톤을 소화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 및 시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농수산물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출하자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하자는 직접 생산자 또는 수집상인으로 구분되며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수 출하자를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수집상인 중간상인에게 지급하는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출하장려금은 생산자인 농어

<p>민에게 전부 혜택이 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p> <p>○중매인 거래보증금은 농안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중매인이 매수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중매인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보증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재 법인에서 거래규모등을 감안하여 1인당 6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경우 대책이 없으므로 중매인의 거래보증금을 관리공사에서 징수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고, 거래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각 중매인에게 돌려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무우·배추등 채소류는 산지에서 규격포장하여 시장에 반입할 경우 부피감소로 출하자는 운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니 향후 농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채소류의 규격포장화를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시정개발연구원〉</p> <p>○자치구 기본계획 종합화 연구에 있어서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구별 중심지역의 발전방안과 지하철 역세권 개발등을 종합하여 향후에는 구간 균형발전이 되어 구간 재정여건이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람.</p> <p>○지역간 개인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민의 정서문화를 함양할 교육·문화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94년도에는 하나 씩 선정하여 연구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p>○연구과제 수탁, 간행물 판매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등 연구원 기금적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p> <p>■생활환경위원회</p>	<p>〈산업경제국〉-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시립 청소년훈련원 포함</p> <p>○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변경 조속 결정할 것</p> <p>○소비자 보호단체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강구</p> <p>○도시가스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설치방안 강구</p> <p>○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관할 구역별 대형화 방안 강구</p> <p>○중소기업 자금지원 적극 홍보대책 강구</p> <p>○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지회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부당, 중단할 것.</p> <p>○농수산물 직판시장 내설있는 건립방안 강구</p> <p>○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간섭, 획일적 시달 등 지방자치제 발전 저해요인 척결 방안 요구</p> <p>○중소기업육성 구조개선자금 지원금 지원 시기 적정 및 정당한 집행</p> <p>○수입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p> <p>○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연수 등에 의존하지 말고 한약 찌꺼기 등을 사료로 이용하고 배설물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등 자력 대처 방안 강구</p> <p>○청소년 직업훈련생 확대모집 방안 및 이탈 등 각종 사고방지 대책 강구</p> <p>○직업훈련생 훈련기간 단축방안 검토</p> <p>○직업훈련생 모집시 어느 일정지역 거주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강화</p> <p>○직업훈련 교사의 적정대우 방안 강구</p> <p>○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등의 자활을 위한 자녀훈련 교육사업 확대방안 강구</p> <p>〈청소사업본부〉-난지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포함</p> <p>○건축물 폐재류 등 콘크리트 재활용 방안 강구</p> <p>○쓰레기 재활용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p>
--	---

기계화 방안 강구

- 청소차량 운전원 복지대책 강구
- 공중변소의 수량확대 및 개량, 개선방안 강구
- 난지도 매립지 관리공사중 악취방지, 침출수 방지공사 등은 종합계획(장기적인 공사)에 묶어두지 말고 보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대책강구
- 이동식 공중변소의 불편없는 완전수거 또는 완전발효 방안강구
- 정화조 청소상태의 적정 기준을 제도화 하고 대시민 홍보 강화
- 쓰레기 수거 수수료 현실화 방안 강구
- 난지도 매립장에 국한된 개나리 식재 등 꽃동산 조성사업의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방안 강구
- 위생처리사업소 직원 복지시설 개선방안 강구
- 위생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제거 대책강구

■보건사회위원회

<보사환경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

- 건강보조식품 난립방지대책 수립과 암예방 시민교육 및 홍보
- 의약과를 약무과와 의무과로 분리 신설
- 마약중독자 취급 전문병원 건립
- 보사환경국 산하사업소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분석
-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대책마련
- 환경개선부담징수액의 일부를 시에서 받아 서울시의 환경개선 투자비용 충당을 중앙정부에 건의
- 시립동부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계획 수립 필요
- 노인치료 전문병원 건립과 무료이동 진료 확대
- 시산하 병원의 자립보다는 저소득계층의 진료확대

<가정복지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유치원과 동등한

자격부여

- 유료도로 톨게이트에 노인 인력 활용
-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 건의
- 청소년회관 목표집단에 대한 사업개발
-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용어의 통일
- 소년의 집과 어린이 마을 통합운영
- 부녀보호소 및 여자기술원생의 의복 색상 변경
- 서울청소년회관 건물을 매각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건립

■수자원관리위원회

<하수국>-한강관리사업소 포함

- 하수관리를 합류식보다 분류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하수도요금율 수도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수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연구
- 하수도관거망전산화 및 상·하수도·도로·가스관 등의 종합전산화기구설치를 적극 검토요망.
- 각 가정의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에 힘쓸 것.
-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홍수해에 따른 수방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대시민홍보 강화.
- 오니케익의 재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 수방시설의 자동화로 수해예방 및 대처 능력 제고
- 유수지관리상태 개선책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강시민공원의 치안 유지를 위해 한강경찰서 개설을 건의할 것.
- 한강수상 레저 업체에 대한 재계약유보 또는 각종 시설물의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강에 폭기봉 설치하는 방안 연구
- 거북선 운영의 개선으로 한강관리사업소



<p>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지선에서의 불법 예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요망</li> <li>○한남대교-용비교사이 진입로 마련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li> <li>○한강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li> <li>○한강시민공원내의 질서유지 및 방범대책을 강구할 것.</li> </ul> <p>〈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li> <li>○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수도요금의 적정화 방안 강구</li> <li>○수도사업소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능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방안</li> <li>○원수 수질상태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요망</li> <li>○2000년대 상수원공급을 위해 북한강상류에 상수원전용댐 설치방안을 검토 요망</li> <li>○상수도배관망도의 전산화의 조속 실시</li> <li>○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 과다로 내부 급수관 개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선 대책 검토</li> <li>○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할 계획 검토 요망</li> <li>○식수와 생활용수를 분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li> <li>○수요가의 옥내배관 노후로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바 식수용파이프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li> <li>○상수도공사시 하수도·가스공사 등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li> <li>○중수도제도의 확대보급실시 방안</li> <li>○도수업체적발 직원에 대한 보상제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계량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 강구</li> <li>○구역유량계 설치로 유효율 제고 방안</li> </ul> <p>■문화교육위원회</p> <p>〈공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분야별,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각종정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내 각 요소에 전광판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li> <li>○시정홍보위원회 효율성 및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 위촉시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인사를 위촉, 활용하고 경실련, 시의회 추천 등도 검토할 것.</li> <li>○서울 600년 사업을 위한 서울 사진대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것.</li> </ul> <p>〈문화관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촌역사관 등 문화유적지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지 근무자를 교육 및 독려하여 수지개선 방안을 찾을 것.</li> <li>○시립극단의 원만한 창단과 예술활동을 위하여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문화창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한국방문의 해 관련 및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나 관광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li> <li>○자매도시에 파견하는 해외주재관에게 관광홍보, 수출지원, 관광정보 등 임무를 부여하여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 정기 및 수시 활동사항을 보고·점검토록 할 것.</li> <li>○문화관광 사업은 지식과 기능을 겸비하여야 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중견간부의 전문화·근속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li> <li>○“자매도시”라는 용어를 “우호도시” 등 우리정서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li> </ul>
---	--

<p>을 검토할 것.</p> <p>〈세종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대계 현업직원(기능직)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대책을 연구·검토할 것</li> <li>○세종문화회관의 지하 및 후정 주차장을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토록 조치 검토할 것.</li> <li>○시민위안공연 및 사회소의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횟수를 제고할 것.</li> </ul> <p>〈공무원교육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개발 연구팀을 상설운영하여 본청 시정개발과 및 시립대학교와 협조체계를 갖추어 교통, 쓰레기, 환경등 시정개발 과제를 선정·연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공무원의 승진목적보다 공부하고 학술연구하는 분위기에 교육의 비중을 둘 것.</li> </ul> <p>〈시립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제1조(설치)중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게 하기 위하여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될 교통, 환경, 수질문제 등을 집중 연구, 본청 시정개발담당관 및 공무원교육원에 연구결과 논문등 과제를 설정, 정기 또는 수시로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이 부문에 대한 '93년도 연구실적은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집중연구하여 주기 바람.</li> </ul> <p>〈서울특별시 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93.12.31 이후 보육시설이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 및 보육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므로 이는 보육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유아원의 시설감소를 초래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보육아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감은 즉시 보완책을 세우고 필요에</li> </ul>	<p>따라 관계기관에 건의등 조치를 취할 것.</p> <p>■건설위원회</p> <p>〈도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봉지하차도 건설 관련 지하매설물 하수암거는 기존대로 현 위치를 변경하지 말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바람</li> <li>○에경유통센타 앞에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공간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li> <li>○국도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li> <li>○지방자치제에 맞추어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li> <li>○도로굴착복구 기금의 사용액이 42%에 불과하고 300억원 정도가 차기로 이월되는데 지나치게 많으므로 도로개설 사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바람.</li> <li>○도로변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택 신축·개축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 건의 바람.</li> <li>○서울시가 도로점용료를 한국전력과 전기통신공사에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중요 원인의 하나이므로 동건과 관련해서 건설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건의바람.</li> </ul> <p>〈동부·서부 건설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기층재를 많이 사용하여 자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1구역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34.2%라는 공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가로 발주하였는데 감독을 철저히 할 것.</li> <li>○건설사업소의 적급 및 정원의 조정을 건의할 것.</li> </ul> <p>〈시설관리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세권 주차장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주차요금이 높은 결과로 보는데 주차요</li> </ul>
---	--

<p>금을 인하여 이용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p> <p>○지하상가의 활성화가 미흡한 사유는 상가관리규정에 제한규정이 많다고 생각되니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상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공원내 편의시설의 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 볼 것.</p> <p>(종합건설본부·건설자재사업소)</p> <p>○조달청 의뢰공사를 서울시에서 직접처리토록 건의하고 조달청 의뢰금액도 상향조정토록 할 것.</p> <p>○서울시 공사시행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후 공사시행을 하기 바람.</p> <p>○승전정 복원공사의 자재중 육송대신 미송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p> <p>○건설자재사업소의 현재 실적으로 보아 합리적 개선방안이 없다면 존폐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p> <p>○건설자재사업소의 존폐여부 미결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p> <p>○사업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호봉, 승진, 수당등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공익목적으로 건설자재사업소 운영이 필요하다면 전문기술자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대형시설로 다량 생산과 우수한 품질관리로 시장경쟁에 의거 공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p> <p>○정능천변 도시고속도로 복개는 전면복개보다 양측복개가 구조적으로나 하천관리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양측을 복개하도록 검토하기 바람.</p> <p>○제설기(휴드로우더)를 고가로 수입한후 단1회 사용하고 장비가 사장상태이니 이를 이용 또는 효율적 운영 대안을 강구할 것.</p>	<p>■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계획국)</p> <p>○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토록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할 것.</p> <p>○도시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후, 시의회에서 결정종결 처리토록 관계법 개정 건의할 것.</p> <p>○서울, 경기집행부 및 의회 차원의 도시계획 협의기구 구성 용의는?</p> <p>○공단용지를 보상,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주에 의한 민영개발을 활성화 할 용의는?</p> <p>○자치단체 업무와 국가사무의 중복성, 연계성이 자치단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니 문제점이 있는 장애 요인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것임.</p> <p>○북한산 자연공원의 입장료와 매점 관리수입은 관리공단어, 편의시설은 서울시가, 청소는 시민이 하고 있는데,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할 것.</p> <p>○판매업무 입찰과정에서 서울시민에게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았다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이니 만큼 서울시민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p> <p>○드림랜드에 각 입소와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지 매도로 인해 양도, 양수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p> <p>○각종 공사계약시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토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업자중에서 공모함이 바람직할 것임.</p> <p>○서울대공원내 동물원과 식물원을 서울대공원내로 국한 시키지 말고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지원받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17%의 자립도라면 서울시민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p> <p>○도시계획국 소관 각종위원회 운영시 위</p>
--	--

원수당 지급사항이 각각이니 유사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함이 바람직함.

○도로로 결정 고시된 현황 도로중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안된 지역이라도 사업상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도시개발기금 관련조례를, 기금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예를 들면, 첫째, 용자금 위주보다 지원금 위주의 기금으로 사용할 것.

둘째, 시재정 투자금융예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셋째, 도심재개발 외에 지역별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중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상비 지출을 억제할 것.

○취약지구 소방도로 예산이 긴급 편성될 수 있도록 각구청에 지침 하달요망.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청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고 봄.

○2000년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사항은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수립이 지연되는 등 현격히 잘못 되어가고 있으니, 하루속히 현 상태 대로 시청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보며, 이에대한 과장급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주 택 국>

○주택건설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건설 지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여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시의회·언론 등에서 문제가 될 사항은 시정개발연구원

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집행부의 바람막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의회의 강공을 피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하는것 같은 것은 지양할 것.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은 잘못하면 상계동과 같은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임.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단위 녹색지역인데 택지보다는 첨단시설 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건축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 이유로서 규제가 너무 많고, 진정내용의 불확실성,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보통 상호 합의 요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법을 완화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규모 건설업의 업무 범위가 200평미만으로서 소규모 건설업자는 종합면허 내기가 불편하고, 종합건설 면허업체는 소규모 건설은 안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면허대여에 따른 무자격자의 시공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면허대여업 년한이 2년이므로 부실시공시 잘못을 가릴수가 없는 등 법 자체가 모순이 있으므로 1,500㎡까지 소규모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상향조정 필요함.

○상주감리는 건축사보가 하고 상주감리도 하지 않은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서울시 지침이라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건의함.

○건축법 제2조 11항, 동시행령 제3조 4항 및 동법 제21조,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건축허가시 도로확보 조건에 따라 일정규모를 도로에서 후퇴시켜 공공용지로 사용한 개인소유 토지에 보상조치가 요구됨에도 재산세까지 부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재산세라도 면제시킬 용의는 없는가?

<p>○일선 공무원의 부조리는 상급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음. 구청 건축적인 경우 걱정한 업무량과 능력에 맞도록 일을 시켜야 함에도 너무 과다하게 업무량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조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봄철에는 임시 인원이라도 보충요망. 또한 건축관련 법규가 너무 많고 규제도 너무 많아 완화가 필요함.</p> <p>○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개인 소유인 것으로 아는데 다세대주택 건립시 기존 계량기값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계량기값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주민에게 홍보하기 바람.</p> <p>○진정인이 자기와는 무관한데도 30번씩 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없는 건물에 대하여 계속 진정하는 사람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이 동일건물에 대하여 수차례 진정하는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영세민 주거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장기민원 해결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함.</p> <p>○과거 시에서 권장한 연탄재 벽돌사용 아파트 건립은 실패작임. 그러나 2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건축도 못하고 있음은 서울시가 책임있다고 봄. 연탄재 벽돌시공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비용이 너무 고가임. 어떤 기준으로 고가의 진단비가 책정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p> <p>○전북방향 때문에 북쪽으로 앞마당이 생기게 되어 기현상이 생기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능마비 및 미관만 해치고 있음. 또한 위법건축물 제재시 단진, 단수</p>	<p>조치는 안맞는다고 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p> <p>○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주택은 공영 주차장 설비금 부담으로 공동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용의는?</p> <p>○재건축시 기존 수도를 사용할 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시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도록 허가상에 기재하여 부당과징금 부담이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p> <p>○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 사업만으로는 충족키 어려우므로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재건축에 각종 세금의 과다 과세로 인하여 민원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세법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것.</p> <p>○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정류장 용지 택지 매각이 부진한데 개선안으로 ①일반회계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과 ②공급가격을 이원화하여 정류장 부지등은 공용으로 하여 택지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음. 어려운점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나 교통국과 협의하고, 건설부에 건의하여 종교단체와 같이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p> <p>○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많았는데 '91년 이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할 것.</p> <p>○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택국장의 의견을 제출 반영하기 바람.</p> <p>○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민원도 많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행정적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많음. 시장이 점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바꾸겠다</p>
--	--

고 약속했는데 안되고 있음.  
주택국장이 건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바람.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하여야 하며 표준건축비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바람.

○불량지구 재개발 지구내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에 세금 면제를 건의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바람.

○국공유지를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대로 관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것.

〈도시개발공사〉

○32억 사기사건에 관하여는 앞으로는 반드시 지적과에 문의해서 국공유지에 한하여 개별 유념해서 처리하되, 용지 보상은 절대 등기부등본만을 신뢰하여 보상하지 말고 지적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토지대장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것.

○노사 쌍방간의 충분한 대화와 해결을 바탕으로 애사심을 발굴하여 회사운영에 개선책을 강구할 것.

○도시개발공사도 도시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민원 발생율이 많은 부서로서 도시생활과 직결된 업무이니만큼 휴게실을 겸비한 민원실 설치를 검토할 것.

○도시개발공사 임원진의 봉급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 주시고, 더불어, 타 공사도 재검토가 필요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4급이 정원대비 13명이나 결원이 있음.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시킬 용의는?

○토지평가에 대해 유익한 방법을 찾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

■교통위원회

(교통국)

○중앙전용차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지하철건설이 2000년대에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아 교통문제가 지하철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주차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하여 선진국의 요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시간단위를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서부간선도로에서 안양 방면으로 고가도로 설치를 검토할 것.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결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

○현재 교통국,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 도로국, 경찰청 등으로 교통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를 총괄할 새로운 기관. 즉 교통공사 등의 직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요금의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버스 및 택시·지하철등 승객서비스향상 및 경영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세밀히 검토한후 최상의 적정수준을 파악후 인상 조치할 것.

○자동차관리 전산망과 행정전산망을 연결하여 주소이전시 자동으로 자동차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

○세차장 확보기준이 10년전의 환경처 지침을 그대로 사용 중인데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교통혼잡지역 조사시 차량 뿐만 아니라 통행인구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p>○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 시민 질서 운동을 전개할 것.</p> <p>○자동차 이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은 행정편의제도이므로 정부에 건의하여 인하할 것.</p> <p>○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전 면허시험자격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건설본부〉</p> <p>○지하철건설 관련 계약이 조달청에 위탁 계약하는 방법대신 서울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것.</p> <p>○제2기 지하철 건설부채가 엄청난 현실에 제3기 지하철 건설을 추가하게 되면 서울시가 부채를 감당키 어려울 것임.</p> <p>따라서 지하철은 그 이용이 현대와 후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이므로, 장기차관에 의한 재원조달과 정부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p> <p>○가칭 “수도권 교통관리공단”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p> <p>○기술자가 우대받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p> <p>○8호선 성남구간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부에 재건의할 것.</p> <p>○제2기 지하철 공사의 저가낙찰 방지를 위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공사〉</p> <p>○버스 및 택시요금 결정권이 '9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 시민서비스향상 및 공사운영개선 등을 위한 지하철요금의 적정수준을 파악 결정할 것.</p> <p>○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전동차 납품 및 구매과정에서의 빈번한 사고가 야기되고 있으니 정부에 건의하여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체 직원이 승진하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p> <p>○조달청 구매가격의 고가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적자 운영중인 지하철공사의 경영쇄신을 위하여 경영관리부 신설 또는 기구 및 인원을 축소하는 등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장애인, 노인등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년 100억원 수입금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건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p>○현 공사의 운영인원 10,585명이 적정한지의 여부 및 타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문과 자동화 가능부문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가 무임승차 우대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p> <p>○지하철건설 과정에서의 부실시공 및 설계미숙 등으로 인한 하자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의 상설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함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p> <p>〈교통방송본부〉</p> <p>○교통방송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순찰대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 청사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p> <p>○상업광고 방송이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할 것.</p> <p>○교통방송 2000년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p> <p>교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것.</p> <p>○교통방송은 수도권 전역에 방송권이 미치고 있는 바 교통방송의 운영재원을 국가 또는 수혜를 받고 있는 경기·인</p>
--	---

<p>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p> <p>○교통정보 전달의 신속화를 위하여 싸이 드카 요원의 정원을 1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교통방송본부를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을 수립할 것.</p> <p>○교통방송에 따른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思料되어 與野 滿場一致로 原案 可決하였습니다.</p> <p>보다 상세한 것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2.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5時 27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內務委員會 郭壽榮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郭壽榮議員 本議員은 內務委員會 郭壽榮議員입니다.</p> <p>오늘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內務委員會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本 改正條例案은 93年 12月 31日 大統領令 第14074號로 地方公務員手當規程이 改正되어 糞尿·下水·廢水·쓰레기處理業務를 專擔하는 機關 또는 施設 勤務者에게 支給하는 獎勵手當 支給額을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規定하도록 委任되어 있습니다.</p> <p>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지금까지 均一하게 5萬원씩을 支給하던 것을 內務部長官이 定한 上限額 範圍안에서 勤務環境이 좀더 劣惡한 糞尿處理場에 勤務하는 職員에게는 月 20萬원, 勤務環境이 보다 劣惡한 下水·廢水·쓰레기 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에게는 月 18萬원씩 支給하고자 提案된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勤務環境이 劣惡한 勤務를 忌避하는 機關 또는 施設에 勤務하는 公務員의 士氣를 振作시키고, 人力補充</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5조(장려수당) ①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별표 4)</p> <p>장려수당 지급 구분표</p> <table border="1" data-bbox="798 1601 1308 1825"> <thead> <tr> <th>지 급 대 상</th> <th>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①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td> <td>200,000원</td> </tr> <tr> <td>②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td> <td>180,000원</td> </tr> </tbody> </table>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②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80,000원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②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80,000원						